

한편 한겨레, 한국, 경향 동질성 회복 강조, 통일을 위한 장기과제 제시하는 안목을 보여 주목받았다. 한겨레는 <물꼬터진 '겨레상봉'>(8, 16 이원섭 칼럼)에서 정상회담으로 바뀐 국민의식을 예로 들며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이산가족상봉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고 <남쪽도 북쪽도 달라졌다>(8, 17 2면)에서는 85년 상봉 때와의 비교를 통해서 성숙된 환경의 변화와 남북한의 변화된 태도를 긍정 평가하면서 체제 경쟁적 발언이 줄어들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하는 계기 마련에 이러한 변화가 기회로 작용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체온'으로 이념 냉기 녹여야>(8, 21 1면)에서는 8·15상봉을 통해서 남북의 다름과 같음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남북의 문화, 이념, 체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화합하고 이념의 냉기를 떨쳐버리는 '사람통일'의 중요성을 기사화하고 있다. 한국일보도 <"이젠 가지 말고 이대로 살자">(8, 17일자)라는 사실을 통해 " '상봉'은 남과 북의 국력을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릴만한 일은 그 어떤 것도 불필요하다. 차분하게 양측이 모두 승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며 남북간의 차이를 인정하며 이번 상봉의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경향신문도 <다시 헤어져야 하는 아픔>(8, 18사설)과 <문화교류 체계있게>(8, 19 사설)를 통해 남북 이질감은 거리를 두고 동질감과 함께 대등하게 묘사하면서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원론적으로는 이산가족상봉 찬성, 각론으로 들어가선 탄지결기

8·15남북이산가족 상봉보도에서 나타난 언론의 양면적인 성격은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상봉초기 유미영 방문단장 자격을 놓고 정치적 색깔론을 거론하며 비판하기 시작했다. 비전향장기수 복송과 관련해서도 국군포로와 남북자문제의 연계를 주장하며 노골적인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고 중앙일보는 북한의 의도와 변하지 않는 체제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며 이후 남북간에 형성된 민족의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태도를 보였다.

(2) 이산가족 개인사연에 집중, 큰 맥락 짚는 보도 부족 --- 방송보도태도 분석

방송 3사 역시 특집방송 형식으로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을 생중계하며 그들의 사연을 전달하는 등 이산가족 만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뉴스에서는 이산가족들의 만남에 많은 시간을 할애,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했다는 평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의 모습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지나친 보도 경쟁으로 이산가족 상봉 자체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비판이다.

**8월 11일~13일** : 상봉을 앞둔 가족들의 개별사연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언행 집중보도, 이산가족 상봉 전체적인 전망 부족

8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이산가족 상봉일 전인 13일까지 방송3사는 상봉을 앞둔 가족들의 가슴아픈 사연과 언론사 사장단 방북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그러나 주로 상봉을 앞둔 준비과정이나 상봉을 못하게 된 가족들의 사연 등 개인적인 내용에 집중했다는 지적이다. KBS는 이산가족 상봉 전에는 주로 가족들의 선물준비모습(12일자 <들뜬 선물준비>)이나 상봉 명단에

서 탈락된 가족들의 사연 (12일자 <대신 전해줘요>), 만남을 기대하는 가족들 모습(12일자 <36년 걸렸다>) 등 상봉을 앞둔 이산가족들의 심경을 전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SBS 역시 상봉을 앞둔 이산가족들의 애처로운 사연을 소개하는 데 많은 비중을 뒀다. MBC는 개별가족의 사연보다는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북한 분위기 등 전체적으로 다른 방송사와 달리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는 평이다. 한편 이시기 방송 3사에서는 언론사 사장단 방북에 관한 보도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언론사 사장들의 대화 내용, 의미 등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졌다. 방송3사는 공통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기초로 '한라산-백두산 교차관광', '10월 이산가족 상봉', '서울답방', '북-미 수교가능성', '언론에 대한 당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을 보도했다. 그중 '백두산 관광' '10월 이산가족 상봉' 등의 보도는 남북 양측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내용이어서 곧 성사될 듯 보도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개인에 대한 보도도 적지 않았다. 방송 3사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나 취미를 보도하며, 김 위원장이 '변화의지'를 갖고 있으며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고 해석하는 등 김 위원장의 '개혁의지'를 강조한 보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8월 14일~16일** : 이산가족 상봉과 개인사연에 지나치게 집중  
김대중 대통령 8.15 축사내용 보도, 사회단체 통일노력 찬밥신세

본격적인 상봉이 시작된 14일 이후부터는 상봉 당사자들에 대한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 방송사는 특집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가족들의 선물준비과정부터 시작, 만남이 이뤄지는 호텔, 상봉장, 만찬장 등 이산가족의 상봉장면과 사연, 그것을 바라보는 해외언론 및 북한언론의 시각 등을 집중 보도했다. KBS는 <이틀 앞두고>, <고향집 선하다> 등의 내용으로, MBC <눈물 바다 된 상봉장>, <언니, 동생>, <아들아>, <미안해 여보>등의 보도를 했다. SBS 역시 <끝내 혼절>, <눈물을 도가니>, <이제 왔나요> 등 방송3사 모두 보도에서도 시청자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더구나 방송뉴스는 특집방송에서 다뤘던 가족들의 사연을 또다시 뉴스에서 재방송해.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나 진행 상황 등 큰 맥락을 짚는 보도가 아쉬웠다.

또 사회단체와 학생 등 통일운동을 진행해 왔던 단체들의 목소리나 의견, 전망 등 사회 전 계층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나, 사회단체에서 했던 통일행사에 대한 보도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8월 17일~20일** : 이산가족 상봉 이후 대책 중심,  
의료폐업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보도 부족

이산가족 상봉 이후 각 방송사는 이번 상봉의 의미와 후속조치, 남북교류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남북이산가족 상봉 이후 민간단체 교류나 사회단체의 평가 등을 보도하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평가다. 또한 이 시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의료폐업 문제에 있어서도 더 발전적인 대안이나 평가를 내보내지 못해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KBS는 8월 18일, <달라진 북한> 등의 보도에서 이번 이산상봉 이후 변화한 남북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취재했다. 또한 8월 20일자 <이산상봉 비용 줄인다>, <국가부담 줄여>에서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더 많은 가족들의 교류를 위해 상봉비용을 낮추는 문제를 다뤘다. 또한 KBS는 8월 21일 <남북산업 표준화>에서 남북경협과 교류확대를 위해 남북의 언어나 산업기준을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MBC는 8월 19일자 <북한변화 느껴진다>라는 기사에서 한국갤럽과 함께 한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통일의식 변화와 의견을 보도했다. 8월 19일자 <후유증 관심필요>, <개선안 곧 합의>, <면회소 서두른다> 등 이산가족 만남 이후 정부대책 마련과 관련된 기사가 주를 이뤘다. 또한 8월 19일자 <식량사정 좋아졌다>와 8월 20일 <북한바람 분다> 등의 보도에서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도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언론의 모습을 보였다. 반면 8월 17일자 <안보조치 이어져야>라는 보도에서 MBC는 북한이 미사일 포기 등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입장을 보도해 다른 보도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SBS 역시 이산가족의 만남 이유와 이후 대책과 관련된 기사가 주를 이뤘다. 8월 18일자 <장소 인원 제한 풀자>, <더 늦기 전에>, <재결합 계속 노력>, <그리움이 고통> 등의 기사에서 이산가족 만남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짚어 주었다. 또한 <상봉비용 30억>에서는 상봉비용을 줄이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생사확인 이라도>는 남북자 가족들의 애환을 다뤘다.

반면 방송 3사는 의료폐업, 매향리 사격장 폐쇄 관련 한-미 협상, 4대 재벌 변칙상속 등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 사회적으로 주요한 주제를 대부분 단신이나 한 쪽지 정도로만 처리했다. 이 때문에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 형성이나 분석이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 2) 비전향 장기수 복송 관련 보도

- 조선일보 상호주의식 부정론으로 일관,  
중앙은 북의 '정치적 이용론' 제기

한편 이산가족상봉 이후 이루어질 비전향 장기수 복송문제를 두고 가장 강력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호주의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다. 조선일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장기수 송환에 대해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장기수도 복송하는 마당에 남북자들도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8월 17일자 사설 <"월북자도 만나는데...">에서 조선은 "아울러 남북자 가족들도 이산가족과 똑같은 대우와 상봉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엇그제 이산가족이 만나고 있을 때 "월북자도 가족을 만나는데 우리도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남북자 가족들의 절규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도 남는다"라며 남북자가족과 이산가족상봉의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해결하기를 주문하고 있다.

이어 8월 19일자 5면 <남북자 가족 가슴친 비전향 장기수 송환>, 8월 22일자 사설 <국군포로, 남북자 포기하면 안돼>를 통해서도 장기수를 복송하는 정부의 태도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남북자들이 가족과 서신교환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라"는 논조를 보이는 등 꾸준히 장기수 송환 문제에 '뼈딱한' 시선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국군포로나 남북자들은 넓은 의미에서 이산가족에 해당하고 이들의 아픔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이번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복송은 6·15공동선언의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안으로 점차적인 이행노력과 추후 협상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인데 조선일

보는 이러한 이전의 합의내용과 원칙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장기수 문제와 남북자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논의를 시도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들의 만남의 감격의 장면속에 남북자 가족들의 항의와 사연들을 대비적으로 실으면서(8, 18 9면 화보) 대립적 갈등 상황으로 몰고 가는 지면 구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중앙일보도 8월 19일자 사설 <장기수 정치적으로 이용말라>에서는 비전향 장기수의 복송이 6·15공동선언의 취지에 맞다고 일면 수긍하면서도 "그러나 몇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북한이 이인모 씨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비전향장기수 문제는 어디까지나 '인도적' 차원인데 이를 국내정치·선전에 이용한다면 모처럼의 조치가 남북관계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 스스로가 송환 취지에 상응하는 성의와 조심성을 보여야 마땅하다" 라며 남북한간에 평화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낸 사안에 대해 북한의 정치적 숨은 의도가 있는 듯 정치적 성격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8월 22일자 사설 <남북자 송환 정식의제 삼자>에서도 장기수 송환에 따른 상호주의원칙을 내세우며 남북자 송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장기수와 국군포로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남북자-국군포로는 어떻게>(8, 19 3면)라는 제목하에 소제목으로 -미귀환 남북 454명...생존확인포로 343명, '장기수 문제와 꼭 연계해야' 지적- <남도 북도 우리를 버렸어요. -'이산상봉의 그늘' 남북자 가족의 절규-> (8, 21 31면)에서도 남북자 가족들의 사연을 통해서 남북자들의 송환과 장기수 송환의 문제를 함께 거론하고 있다.

8월 21일자 시론 <국군포로-남북자 외면말라>(정용석(단국대 교수, 정치학)에서 동아는 "...정부가 북한에 장기수 복송을 덤으로 끼어주었다는 것은 기존의 상호주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요, 지나친 양보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의 글을 실으면서 6·15공동선언의 합의내용에 대한 정부이행의 성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니는 정부의 정책쪽에 문제가 있다는 투로 비판 하였다. 이처럼 장기수 복송과 국군포로 및 남북자 문제를 연계시키며 반복감정을 강하게 드러낸 조선, 중앙, 동아의 논리는 상호주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대결논리로 발전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 3)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 방한 관련 보도

수구·보수 언론은 김용순 비서 방한 관련보도에서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탄지결기에 여념이 없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조선, 중앙, 동아 등은 정상회담자체를 평가절하하며 경제위기론을 들이대어 남북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했다. 이에 반해 한겨레, 한국, 대한매일등은 긍정적 시각으로 보도해 차별성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대체로 관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0년이 걸리는 가족 상봉...." - 조선 일보의 탄죽결기의 진실?

조선일보는 9월 15일자 3면 <향후 남북 일정표 윤곽 드러나>에서 이번 회담이 이산가족 생사확인의 해법을 구체화했다고 일단 긍정적인 뒤 "8·15 교환방문때는 200명중 138명의 생사를 확인하는 데 10일 남짓 걸렸다. 이런 식이라면 통계청 조사로 40여만명에 이르는 이산 1세대의 생사를 확인하는 데 100년 가까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라며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이산가족 서신교환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김용순 비서의 방문을 두고 방법론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남북화해와 협력을 저해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또한 국방장관회담 개최와 관련, 18일자 4면 <"남한에 먼저 가겠다

"북측 적극적>제하의 기사에서는 제목과 달리 기사의 뒷부분에서 북한이 회담 의제를 경의선 및 도로 문제로 국한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북측은 우리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에는 일단 소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며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회담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아울러 이 기사는 3국에서 열기로 했던 국방장관회담을 북측이 양보해 제주도에 열리게 된 점에 대해서도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다.

#### 불도저식 '상호주의'의 폐해

최근 수구 혹은 보수언론들이 강조하는 상호주의는 상호 이해와 존중의 원칙은 간데 없고 철저한 1:1 원칙에서 조금의 양보도 없다. 이러한 '불도저식' 상호주의'는 결국 북한과의 생산적인 통일논의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9월 17일자 사설<정신나간 대북담당자들>에서 조성태 국방장관과 북한의 박재경 대장과의 오찬 만남, 제주 우근민 지사의 과공, 문희갑 대구시장의 공항영접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지나친 대북 유화 정책"이라며 "분노하는 국민의 심정을 이 정부가 과연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을 들먹이며 감정적 비판을 가하고 있다. 9월 15일자 권영빈 칼럼에서도 지금의 통일 정책을 "북과는 무엇이라도 좋다"식의 포용정책이라고 폄하하고 북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1:1 식의 주고 받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된 통일관은 9월20일자 중앙시평 <정부가기를 포기했나>에서 극에 달했다. "우리는 어디에도 참을 길 없고 오직 그들만 있는 것 같다. 혹시나 신경을 건드릴까..."라는 식으로 정부의 대북 저자세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중앙보다 더 악의적인 왜곡을 보인 것은 바로 조선일보다. 조선은 9월15일자 사설 <북대표에 '안달'하는 우리 공직자들>을 통해 "그 같은 인물이 진짜 어떤 진의를 갖고 서울에 왔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우리 국방부와, 조 장관이 뒤늦게 그를 만나려고 안달했다는 사실이다"라며 "다른 장관도 아닌 국방장관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들을 창피하게 만들었다", "평화의 구축과 보장은 아직도 갈길이 먼데 국방장관마저 이 같은 경박한 처신을 보여준다"고 맹공격했다. 이 사설에 대해 국방부는 조목조목 지적하며 조선일보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9월16일자 4면에서 국방회담 관련 친서가 판문점 군사정전위를 통해 전달된 것에 대해 북한의 군사정전위 기능 회복 메시지일 수 있다는 조심스런 해석을 내리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보다 강도높게(분명하게) 14일자 4면 <북대장이 전달 '송이'뜻은/ 정상회담때 약속 지켜 공동선언 이행다짐 / 군실세 내려보내 '평화메세지'부각도>에서 일부언론의 대북저자세 비판을 무색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일보는 박재경 대장의 짧은 만남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의 최측근이자 군부 실세인 박재경 대장이 직접 갖고 가게 함으로써 평화메세지도 함께 담으려 했다. 북한군이 남침위협 등 전쟁준비가 아니라 송이 채취 등 평화사업에도 나서고 있음을 은연중 부각시키려 한 것이다"며 북한의 반응을 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한때 반통일 세력으로 격렬히 비난했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도 송이가 전달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 등과도 관계를 개선, 당면한 대북식량차관 채공 등을 위해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대한매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4일자 4면 <북, 박재경 대장 '송이특사'로>제하의 기사에서 "...군부가 많이 변했다는 점을 과시함으로써 식량지원이나 경험 등에서 우호적인 남쪽 여론을 이끌어내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중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림으로써 우리 정부의 태도를 대북저자세로 비판했던 일부 언론들과

는 상반된 논조를 보였다.

한편 경향신문은 9월 17일 4면 <야 '달라는 대로 다준다' 청와대 '얻은 게 더 많다'>에서 대북양보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공방에 대해서 어느 한쪽을 부각시키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다.

#### 조선, 동아, 중앙의 '경제 위기론'

조선일보는 9월19일 1면 머릿기사에서 절묘한 편집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또 위기 국면... 경제가 급하다>, 중간제목<악몽의 '검은 월요일'주가 50P폭락>을 크게 확대한 반면 기공식 행사 사진은 그 가운데에 배치시킴으로써 조선일보 독자들로 하여금 과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사업 추진이 필요한가라는 회의를 갖도록 만든다. 이는 경제상황의 난맥상을 들어 대북사업의 속도나 규모를 조절하게 하는 견제의 역할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의도적인 편집으로 지적받았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9월20일자 사설<잔치판보다 신뢰회복부터>에서부터 두드러졌다. 조선은 경제지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온나라가 대북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며 "지금은 분수에 맞지 않는 잔치판을 벌일때가 아니라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다"라며 대북 사업을 분수에 맞지 않는 잔치판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동아일보도 9월20일자 사설 <경의선 축제와 증시몰락>에서 "남북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대북지원도 불가능하다"며 통일문제와 경제문제를 연계시켜 그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독자수를 확보하고 있는 조선, 동아가 안보공백, 군사적 긴장 완화 선조치, 경제상황 등을 내세워 통일 논의에 탄지를 걸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서서히 고개드는 경제위기론에 대해서는 냉철한 평가와 대안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산적 결론을 배제한 채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주변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신문이상의 신문'을 표방한다는 언론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 4)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 1부위원장 방미관련 보도

10월 9일 이루어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특사인 조명록 인민군 차수의 방미는 94년 제네바 기본합의문 발표, 96년 미사일 회담, 99년 북-미 베를린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이번 방미에서 이룬 성과들은 6.13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더욱 북돋아주고 있다는 평이다. 실제로 12일 발표된 북-미 공동성명을 보면 정전협정을 평화보장 체계로 전환하고 적대적 관계의 종식, 테러반대 국제 노력지지 등 획기적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미관계의 진전에 대해 일부 언론은 혹시 남한을 따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였다. 일명 '통미봉남', '봉남통미'식 논리가 바로 그것인데 조선, 동아, 중앙일보가 이런 논리를 편 대표적 신문들이다.

조선일보는 북의 대남 정책의 기본전략이 "통미봉남"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10일자 사설 <조명록의 방미를 보는 시각>에서 조명록의 방미가 북미관계정상화에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김정일 정권이 남측과는 물론 여러채널과 대화를 하지만 그것은 대남정책의 기본전략이고 통미봉남 원칙이 여전히 폐기되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10월 2일자 사설 <조명록 차수 미국가는 속뜻?>에서 북이 한반도의 근본문제를 미국과만 상대하고 남한과는 경제협력만을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6.15공동선언이 가치없게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조명록 차수의 방미가 통미봉남의 일환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덧붙였다. 10월 5일자에서는 외부필자 김학준 칼럼 <남을 어렵게 만드는 北>을 통해 "사실상 남을 소외시킨 채 북미대화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전제조건없이 고위급 회담에 임하는 북의 태도를 전향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간의 군사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통미봉남' 운운하며 우려의 시각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10월 1일 사설 <조명록 차수 왜 미국 가나>가 대표적이다.

남과 북은 국방장관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3월에는 베를린 선언, 6월에는 정상회담과 1·2차 적십자 회담, 7-9월에는 1·2·3차 장관급회담, 9월에는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평양과 서울, 제주와 금강산을 오가며 이루어진 회담들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평양교예단, 8.15교향악단)와 인도적인 교류(언론사 사장단 방북, 이산가족 상봉, 비전향 장기수 송환)도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고 남북 모두 각종 회담과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통미봉남' 운운하며 남북문제에 정부가 과속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조선, 동아, 중앙의 시각은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와 흐름에 정면배치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 한국일보 - - 구체적·현실적 실례로 '통미봉남'의 논리 비판

'통미봉남'의 논리에 대해 반론을 펴는 신문도 있었다. 한겨레가 대표적인데, 이 신문은 방미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왜 방미를 하고 그 성과는 무엇이 될지 차분하게 짚어주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이 통일을 앞당기는 과정이라며 조명록 차수의 방미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북한의 테러국 해체에 대하여 각 신문은 과거 북한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테러'를 상기시키며 못마땅해하는 논조를 역력히 보여주었다. 10월 9일자 각 신문의 관련 사설들이다.

북한의 '反테러' 선언과 책임 -- 동아일보

북한의 KAL기 폭파책임 그냥 넘어가나--중앙일보

KAL機 희생자만 애석하다 -- 조선일보

북한의 테러반대 성명을 환영한다 --한겨레

'급류타는 北.美관계 개선 --한국일보

테러 지원국 명에 벗도록 -- 대한매일

테러국 해체와 관련하여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87년 KAL 폭파사건과 83년 아웅산 테러에 대해 정부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못 받아내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비판을 가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테러지원국 해체 관해 우리 정부가 '유감표명 한마디' 없이 오직 환영만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5) 노동당 창건 55주년 사회단체 및 개인 초청 관련 보도

지난 1일 북한은 노동당 창건 55돌을 맞아 남한의 정당,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일부 개인을 초청했다. 이에 대해 일부신문은 북한의 제의가 통일전선전술의 연장이라고 지적하며 애초 방북 허용에 유보적이던 정부가 방북허용으로 입장선회한 것으로 두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보였다.

한국일보는 10월 3일자 <'연석회의' 초청 의도 무얼까>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통일전선전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10월 9일자 사설 <주류가 빠진 이유>에서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급진세력의 방북은 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논조를 보였다. 특히 원내 의석없는 민주노동당의 참관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리고 10일자 5면에서는 3단으로 <민노총 방북불허 항의 출발 3시간 지연>의 제목으로 기사를 실기도 했다.

동아일보 역시 3일자 사설 <북한의 적절치 못한 제의>에서 "북한측의 이번 제의는 내부적으로 '통일열기'를 고조시켜 체제 강화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의 분석처럼 6.15공동선언이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시험'하겠다는 의도라면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추측'에 기반한 강경논조를 보여주었다.

중앙일보는 보다 노골적으로 제목을 달았다. 3일자 사설 <노동당 기념식 갈 필요 없다>에서 중앙은 "노동당은 북한체제의 본체다. 6·15선언 이후 북한이 변했다지만 아직 본질에서 변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변치 않는 노동당 기념식 참가는 '노동당의 전국화'에 우리 스스로 기여하는 일이다."라고 강경기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10월 4일자 5면 『북초청 전문가 분석』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에서 <"통일전선 구축 일환인 남분열 속셈"/"김정일 통일지도자 부각 노린 것"/"논쟁거리 던져 남북관계 시간 벌기>라는 제목을 달았다. 부정적 해석 일변도다. 같은 날 <북의 '정치행사' 대비해야>라는 시론 역시 북의 초청배경을 두고 "우리사회의 내부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고 단정짓고는 남남분열의도가 있으니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또 정부의 방북 승인에 대해 무원칙하다며 집중비판했다. 7일자 기자수첩 <노동당의 초대장>과 9일자 사설 <'노동당 행사'와 정부의 무원칙>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9일자 사설에서 조선은 북한의 초청을 "과거에 취해왔던 대남전략상의 방식"이라고 단정하고 정부가 불허방침에서 허가로 다시 바뀐 것을 원칙이 없다고 비판했다.

## 6) 북파공작원관련 보도

- 대체로 소극적 보도, 한겨레 심층 보도 돋보여 -

북파공작원의 존재 유무는 지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지난 2월 MBC 'PD수첩' '북파 무장공작원' 편이 방송이후로 추정된 후 수면위로 떠오른 이들의 존재에 대해 대부분의 신문들은 실체를 인정을 하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일보와 중앙이 각각 10월 4일자와 7일자 사설 <북한공작원 실체 인정해야>, <북파 요원 몇몇이 대우하라>를 통해 정부가 북파공작원을 인정하고 생환노력과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 조선, 대한매일 등 대부분의 신문이 일반 기사에서 간단하게 다룰 뿐 적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겨레신문만이 꾸준하고 적극적인 보도로 단연 돋보였다는 평이다.

한겨레는 9월 19일 사설 <'북파공작원' 외면 말아야>에서 남과 북이 서로 휴전협정을 위반한 마당에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북파의 협상에 병행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북파공작원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9일부터는 아예 <드러나는 진실 / 북파공작원>이라는 기획 기사를 실었다. <우리는

'인간병기'였다>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으로 한겨레는 과거 북파공작원들을 실상을 상세히 기사화하였다. 더 나아가 냉전에서 벗어나 화해로 가는 길에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4. 통일에 있어 언론의 역할

50년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과제는 '통일을 위한 준비'이다.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남한 내부의 '준비'이다.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우리 내부의 목소리를 '통일'해 내려는 노력 없이 통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국민이 이러한 준비를 하도록 언론은 정확한 정보와 여론을 통해 도와주어야 한다.

통일 과정에 있어 언론의 역할은 지대하다.

우리는 모두 언론지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지면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구조와 언론인들의 가치관,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의도적으로 오보와 왜곡보도를 남발하거나 선부르게 예단 추측하여 보도하는 것은 언론인이 가야할 정도가 아니다. 특히 통일문제처럼 한반도 전체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과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국민들은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원한다. '북한에 대해 마구 퍼준다'는 식의 '저자세 외교론'이나 '북한의 요지부동론' 등은 모두 증거가 불충분한 주장들이다. 사실도 아니다. 통일이 장애받기를 원하는 수구언론의 '희망성 오보'의 범주에 들 주장들이다.

언론이 다시 태어나 통일시대에 걸맞는 언론의 역할을 통해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의 동반자로 우뚝 서주기를 기대해 본다.

##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인권: 사회경제적 측면

심영희 (한양대 사회학과)

### <차례>

1. 서론 .....	71
2. 사회경제적 차원의 여성인권: 노동권과 평등권 .....	71
2.1 여성인권의 관점과 분야 .....	71
2.2 사회경제적 차원의 여성인권: 노동권과 평등권 .....	73
3. 북한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 법과 현실 .....	74
3.1 북한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 관련법 및 정책 .....	74
3.2 북한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의 현실: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	80
3.3 남북한 여성의 노동권 평등권의 비교논의 .....	88
4.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여성인권의 문제는 무엇인가? .....	89
4.1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변화와 문제는? .....	89
4.2 통일이전의 교류단계에서의 여성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	91
4.3 통일이후의 여성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	92
5. 요약 및 결론: 여성주의적 개입의 필요성 .....	94

### <표차례>

<표 1> 여성인권의 두 관점과 분야별 개념화 .....	73
<표 2> 여성관련 주요 남북 노동법 규정 비교 .....	77
<표 3> 만 16세 이상 직업별 남녀 노동자 구성비 (1986-7) .....	83
<표 4> 북한의 성별 노동력 분포 (1986 추정치) .....	83
<표 5> 주요 계층별 임금수준 (단위: 북한원) .....	86
<표 6> 여성의 주요 직종과 평균임금 .....	86
<표 7> 통일단계별 경제 인적 교류방식과 교류내용 .....	90

## 1. 서론

이 글에서는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우리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변화가 사회경제적 차원의 여성인권에 어떤 변화를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여성의 인권이란 무엇인지 개념정의를 논의한다. 이 글에서는 이것을 노동권과 평등권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런 개념규정에 입각하여 둘째, 북한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은 어떠한가에 대해 법과 현실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남북한의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을 비교해보아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셋째,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변화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것이 사회경제적 차원의 여성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그리고 끝으로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모색해보기로 하겠다. 여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북한의 법령들과 기존에 발표된 통계자료들임을 밝혀둔다.

## 2. 사회경제적 차원의 여성인권: 노동권과 평등권

먼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여성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인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여성인권의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에서 여성인권의 개념화를 소개해 보겠다 (심영희, 1998 참조).

### 2.1 여성인권의 관점과 분야

여성의 인권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체화되고 세분화될 수 있다. 즉 여성의 권리는 모든 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동등한 대우를 전제하되 여성으로서 누려야 할 “차이”로서의 권리를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한상진, 1996: 25).

인권을 여성에게 확대하는 전자의 인권개념의 예로서는 국제인권규약을 여성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인권논의에서 제외된 여성의 인권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 최소한 법적·형식적으로 동등한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편의상 이 개념을 “소극적” 인권개념, 또는 협의의 인권개념이라고 지칭하겠다. 후자, 즉 여성주의적 인권 개념의 예로서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여성의 입장에서 인권을 보고 규정하는 것,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편의상 이 개념을 “적극적” 인권개념, 또는 광의의 인권개념이라고 지칭하겠다.

위에서 여성인권의 개념 또는 관점을 소극적, 적극적 개념으로 대별하여 정리해보았다. 그러면 여성인권의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성인권의 구체적 분야들은 크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적 영역의 인권으로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등을 들 수 있고, 사적 영역의 인권으로서는 혼인과 가족관계에 대

한 권리, 신체적 안전과 존엄의 권리, 인격적 표현과 자기표현의 권리 등 가족, 성, 담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을 들 수 있겠다 (<표 1> 참조). 이 글에서는 이중 사회경제적 권리에 초점을 둘 것이다.

<표 1> 여성인권의 두 관점과 분야별 개념화

		소극적	적극적
공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정치나 공직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형식적 권리; 투표에 참여할 권리, 공직에 참여할 권리; 법적 형식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열어 놓기	실질적으로 평등한 조건에서 정치나 공직에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 평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 만들기; 공직 참여시 여성 할당제 도입등
	경제적 권리	일할 기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형식적 권리; 모집, 배치, 승진, 임금 등 (용모제한, 직장내 성별분업, 임금차별, 성희롱 등)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실질적으로 평등한 조건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 평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 만들기, 예: 가사노동의 사회화, 공동육아 등
사적	신체적 안전과 인간존엄의 권리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매춘 등 성적 억압이나 폭력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이런 사건들의 수사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제2 제3의 피해, 정보화사회에 나타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희롱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성폭력을 조장하는 성문화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성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혼인, 가족관계에 대한 권리	이혼권, 자녀에 대한 친권,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가정내 가부장제의 억압과 성별분업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진정한 선택으로서 혼인, 임신, 출산을 할 권리
	인격적 존중과 자기표현의 권리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해방될 권리	의사표현의 권리, 담론의 권리, 의사소통 능력의 권리 욕망의 언설화

자료: 심영희, 1998

### 2.2 사회경제적 차원의 여성인권: 노동권과 평등권

이렇게 볼 때 대체로 사회경제적 차원의 여성인권은 공적 사적 영역 중 공적 영역의 여성인권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성차별이자 인권침해로 볼 수 있으며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권리의 경우도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즉 소극적 개념의 경제적 권리는 기회의 평등, 즉 기회를 열어놓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적극적 개념의 경제적 권리는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이나 상황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실질적 평등, 조건의 평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명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소극적 개념의 경제적 권리는 사회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일할 기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형식적 권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예컨대, 모집, 배치, 승진, 임금 등에서 동등하게 기회를 가질 권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 개념의 경제적 권리는 평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 뿐만 아니라 차별 받지 않을 조건을 가질 권리(직장내 성별분업, 임금차별, 성희롱 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평등한 조건에서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 평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 만들기, 예컨대 기혼취업여성이 가사노동의 사회화, 공동육아 등을 사회적으로 지원 받을 권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권리 중 소극적 개념의 경제적 권리는 기회의 평등, 즉 기회를 열어놓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권"이라고 할 수 있고, 적극적 개념의 경제적 권리는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이나 상황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실질적 평등, 조건의 평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명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권은 사회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일할 기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형식적 권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평등권은 평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 뿐만 아니라 차별받지 않을 조건을 가질 권리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평등한 조건에서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 평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 만들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여성인권의 법과 실태를 살펴보고 비교해 보기로 한다.

### 3. 북한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 법과 현실

#### 3.1 북한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 관련법 및 정책

북한의 대여성정책은 그 출발에서 원래까지 정치일선에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이라는 슬로건을 주요과제로 일관되게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을 각종 직업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시켜 전문지식과 기술을 획득케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성의 정치, 사회적 참여확대는 결과적으로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 지위를 바꾸어 놓아 여성노동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여성의 인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서 북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관련 법과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전 주민을 노동계급화 시켜왔으며 특히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을 국가적 차원의 선결과제로 해결해 왔다.

이를 위해 법률 차원에서는 헌법과 노동법 등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반 조항을 제정하여 여성들의 사회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와 연결하여 정책적 차원의 노력도 병행되었다.<sup>1)</sup> 여기에서는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을 사회주의 노동법과 남녀평등권법령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겠다.

#### 1) 노동권에 관련한 법조항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노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제 69조)", "국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 있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제 56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갖는다.(제 62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법은 1946년 제정된 법률이 기본구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북한의 노동법은 "사회주의 노동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가.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북한 노동법 제 4조는 사회주의하에서 국민은 노동에 참가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국민은 자기능력에 따라 사회적 노동에 참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제 5조는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숙대 통일문제연구소, 북한의 여성정책, <http://women.or.kr/unification/policy/wlaw01>)

#### 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조항 (노동력 배치의 원칙)

또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을 성별, 연령, 희망, 기술기능 수준에 맞게 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하는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제 30조). 그러나 북한의 모든 노동력은 국가노동행정기관의 파견절차에 의하여 파견되어 구체적인 일자리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북한에

1) 북한여성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예컨대 윤미량(1991)은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다.

- 1단계 : 반전반봉건 혁명기(1945~1946)
- 2단계 : 사회주의 혁명준비기(1947~1950)
- 전쟁과 전후복구기(1950~1960)
- 사회주의 건설기(1961~1971)
- 사회주의의 발전기(1972~현재)

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근로자의 희망은 고려되지만 중앙집권적 노동력 배치 계획에 따라 직업이 배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노동력의 산업별 직종별 분포는 노동력의 배치원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북한 당국이 고수해 온 노동력 배치원칙은 여성들을 '쉽고 가벼운 일'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다. 여성근로자의 취업기회의 확대규정에 관한 조항

북한의 노동법에는 여성관련 법률을 자세히 제정하여 여성들의 노동을 장려하여 왔다. 여성의 노동권 보장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여성근로자의 취업기회의 확대규정을 들 수 있는데 이 여성관련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들의 사회적 노동 참여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노동법' 제 31조에는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지방정권 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 단체는 여성들이 일하기 편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원 편의 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 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 고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2) 평등권에 관한 법조항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 62조에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 사후 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을 가정 일의 무거운 부담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한다.' 고 명시하여 법적으로 여성의 평등권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권 조항을 통하여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목표로 하였으며 사회주의적 인간화인 남녀 평등을 이룩하려 하였다.

더 나아가 1946년 7월 30일 북한의 남녀평등권 법령이 발표되었다. 제 1조에는 '국가 경제 문화적, 사회정치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은 남자와 같은 평등권을 가진다' 고 명시했다. 또한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제2조), 남자와 동등의 노동권리와 동일한 임금과 사회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제3조)고 명시되어 있다.

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조항

여성의 사회적 노동의 보다 구체적인 조건들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다. 먼저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법 제 7조에 '동일한 노동과 동일한 기술을 가진 노력자에게는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동일한 임금을 지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남한에서는 여성에게 동일가치노동의 경우에 동일노동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보다 앞선 조항으로 비교된다.

나. 모성보호 및 여성보호 조항

그밖에도 북한은 산전산후 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모성보호 및 여성보호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젖먹이 아이가 있는 여성의 경우는 1일 2회 30분씩 젖먹이는 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16조), 태모와 유모의 경우 야간노동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왔다(17조). 또한 여성보호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59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보호 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여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다고 한다. (선한승, 1995, 23쪽)

산전산후 정책, 탁아제도, 사회복지 등 여성근로자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여성관련 주요 남북 노동법 규정 비교

	남한	북한
노동의 권리와 의무	헌법에서 규정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존재)	국민의 노동의 권리와 노동참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노동법 규정에 존재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에서 보장	근로자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근로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 국가적 의무
여성근로자의 취업기회의 확대	일부 여성고용할당제의 시행	국가의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 의무가 존재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한 노동과 동일한 기술을 가진 노력자에게는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동일한 임금 지불
여자와 소년의 보호	15세 미만은 채용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2시간 초과 불가.	16세 미만은 채용금지. 수유아동을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노동 금지
출산휴가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 보장 (산후 3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산전 32일, 산후 42일간의 산전산후 휴가.
사회보장	예외적인 사회주의적 경제원리의 수용으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 제도 확립	국가의 의무적 사회보장제도

자료: 선한승, 1995, 34-35쪽에서 발췌.

#### 다. 산전산후 정책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산전, 산후 휴가제도를 법제화하여 놓고 있으며 노동권과 함께 휴식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92년 4월 9일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71조와 지난 1978년 4월 18일 공포한 「사회주의 노동법」 제62조에서 각각 "국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 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임신부에게는 법적으로 산전, 산후에 걸쳐 150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유급휴가란 아이를 낳기 위하여, 또 아이를 낳은 후 몸조리를 위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해도 봉급이 평소와 같이 나온다는 말이다. 북한은 지난 1976년 4월 29일 제정된 종래 「사회주의 노동법」을 근거로 산전 35일, 산후 42일 간의 휴가를 주었으나 지난 1993년 1월 총 6장 63조로 구성된 「어린이 보육교양법 세칙」을 제정, 임신부에 대한 유급휴가일을 산전 60일, 산후 90일 간으로 늘렸다. 산전 산후의 노동조건과 보수에 대해서는 '임신중인 여자는 임신 6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산전휴가에 이르기까지 경한 노동에 넘어갈 수 있으며 그 동안의 임금은 최근 6개월간의 평균보수급에 의하여 지급한다'(15조)고 규정하고 있다. (숙대 통일문제연구소, 북한여성과 사회, 사회보장제도, <http://women.or.kr/unification/society/welfare>)

#### 라. 탁아제도: 직장가정의 양립을 위한 조치

또한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함께 더욱 절실한 문제는 바로 자녀양육의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아동의 사회적 집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으며 탁아소와 유아원의 건립이 증가되었다. 1958년부터 주 탁아소, 일 탁아소, 월 탁아소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1964년 '유치원 사업개선을 강화할 데 대한 새로운 대책에 대한 내각결정'을 발표하여 여성들의 자녀교육부담을 줄이고 있다. 현재 북한은 국민의 교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고 11년 동안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47년 6월 「탁아소 규칙에 대한 보건국 명령 제5호」와 「탁아소에 관한 규정」(1949년 2월 1일 보건성 규칙 제1호)을 제정한 이후 1976년 4월에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채택하여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탁아소는 일일탁아소, 주탁아소, 월탁아소, 계절탁아소 등으로 구분된다. 일일탁아소는 공장, 기업소, 농장, 그리고 각도에 200-300명 기준으로 1개소가 운영되며 주, 월 탁아소는 평양, 함흥, 청진 등 3대도시에는 2개 구역당 1개소가 개설되어 있고, 중, 소 도시에는 2-3개소, 군소재지에는 1-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일일탁아소는 유아가 적은 부모가 매일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이용하고 주, 월 탁아소는 유아가 많거나 부모가 장기 파견근무때나 연예인 등이 장기적으로 지방공연을 떠날 때 이용한

다. 주탁아소는 일주일에 한번씩 유아를 데려오고 월탁아소는 한달간 맡겼다가 데려오는 것을 말한다. 유형은 공장, 기업소, 농장 작업반 등 직장에 병설된 탁아소와 노동자구, 읍, 리, 동 등 거주지별로 개설된 탁아소가 있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탁아소와 유치원 이용을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북한지역 주민의 자녀 1인당 탁아소, 유치원 이용부담액은 월평균 약 15-20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북한 주민의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70-100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와 사회의 부담이라는 명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탁아소와 유치원 제도가 오히려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생후 90일 이상 3세 이하의 어린이는 탁아소 연령에, 그리고 4세 이상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유치원 연령에 해당하며, 아이를 맡기는 것은 부모의 자율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출근을 하지 않으면 식량배급이 줄어드는 등 각종 경제적 불이익과 정치적 압력이 가중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사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 보육교양법」에 그대로 나타나 있듯이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은 사회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정치사상의 주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할수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은 국가사회복지시설로 육아원, 애육원, 양생원, 양로원, 정양소, 정신병자 수용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육아원과 애육원은 6세 미만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기관이다. 북한은 「사회보험법」에 의해 일시적인 질병이 아닌 질병, 부상, 임신, 해산에 관하여 의료상의 도움을 주기 위해 정양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숙대 통일문제연구소, 북한여성과 사회, 사회보장제도, <http://women.or.kr/unification/society/welfare>)

#### 마. 가사노동의 사회화: 직장가정의 양립을 위한 조치

이러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법적 보장과 동시에 평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그것은 여성들이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여러 가지 방침들과 자녀양육의 지원을 위한 탁아소와 유아원 건립의 증가였다. 그 중 하나인 1978년에 발표된 '사회주의 노동법'에는 국가가 여성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여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1970년 11월에 개최된 노동당 5차대회에서는 이를 위한 제반 조치로서 공동 세탁소, 밥공장, 반찬공장, 공동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따라서 직장을 가진 부녀자들이 가족식사를 밥공장에 위탁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는 상점, 병원, 세탁소, 이발소등의 사회봉사시설에 대한 이용 편의가 제고되었고 가사노동의 서비스 산업화가 추진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는 냉장고, 세탁기 등 현대적인 가정용품의 공급증대를 통해 가사노동의 상품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여성노동 관련 법조항들은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도 과연 그러한가?

### 3.2 북한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의 현실: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북한여성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위의 법령의 구체적인 시행여부와 이를 통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법령과 정책은 실제 현실과는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 보기는 힘들다. 구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숙대 통일문제연구소, KDI 북한경제연구센터,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자료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1990년까지의 자료이고 그 이후의 자료들은 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북한여성의 노동현실을 위에서 논의한 노동권과 평등권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재까지 북한의 직장 여성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여성노동의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자.

#### (1) 여성 노동권의 현실

##### 가. 경제활동참가율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노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제 69조)", "국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 있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제 56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갖는다.(제 62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북한의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가 없다면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00%에 가깝고 성별 직업 분리현상이나 성별 임금 격차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엔개발기구(UNDP)의 추정에 의하면 1990년도 북한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4%이다. 또한 통일원의 추정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5년에 61.0%(남한 56.3%)였는데 1995년에는 69.8% (남한 64.5%)로 증가했다.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에버스타트와 바니스터가 발표한 북한의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그리고 북한 노동력의 49%가 여성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1986년도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8.2%이고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1.1%인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북한의 노동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추정방법에 따라서 추정치가 다르지만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다 (김애실, 1997).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북한이 추진해온 여성의 노동계급화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기혼 여성들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원,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사회주의헌법 제 31조)하고 출산과 자녀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왔다. 이는 막대한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남성들이 장기간 군복무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여성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귀순자들의 증언과 문헌들에 의하면 북한 여성의 직장 노동참가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혼인상태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한다. 직장 노동참가율은 대도시와 농촌에서는 높으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낮고 미혼여성의 참가율은 매우 높지만 기혼여성의 노동참가율은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도시에는 여자들이 식당, 상점, 공장 등에서 비교적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참여율이 높고, 농촌에서는 협동농장에 강제로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혼여성의 90%정도는 직장노동을 하는데, 이들이 결혼하면 60-70%가 직장을 그만 둔다고 한다 (김애실, 1997).

그런데 북한의 여성들이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 두는 원인이 육아 및 가사부담에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귀순자들에 의하면 북한의 주민들은 집안 일은 당연히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는 생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나. 취업구조

다음으로 취업구조를 살펴보자. 북한의 노동(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 이상으로 잡았을 때 1992년 현재 1523만 8천명으로 총인구대비 구성비는 68.2%이다. 북한에서 여성노동력의 비율은 1991년 현재 49%이다. 이는 북한에서 여성노동력의 차지하는 중요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처럼 여성노동력 비율이 높은 것은 북한 전체인구의 6%, 남자인구의 12%에 해당하는 남자가 군대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들 군인의 수는 16세 이상 남자의 21%, 특히 노동력이 왕성한 16-28세 남자의 42%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여성노동력으로 메우고 있다 (선한승, 1995).

<표 3>은 북한의 만 16세 이상 인구의 직업분포 및 여성비율을 보여주고 있다<sup>2)</sup>. 북한의 직업은 크게 노동자, 농민, 사무원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여성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 1987년 현재 국영기업소 노동자 57%, 공무원 16.8%, 농장원 25.3%, 협동기업소 노동자 0.9% 등이다 (<표 3> 참조). 그리고 같은 해 여성노동력의 분포현황은 농업 55.5%, 공업 45.5%, 탄광 지하노동 20%, 중공업 15%, 경공업 70%, 임업 30%, 교육분야에서는 여교사의 비율이 인민학교 80%, 고등중학교 35%, 기술계 학교 30%, 대학교 15% 등이다. (선한승, 1995, 35쪽)

<표 4>는 <표 3>의 자료와 전체 노동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사용하여 남녀노동력의 분포를 추정한 것이다 (김애실, 1996). 공식부문 근로자는 노동자, 농민, 사무원, 공무원 등으로 식량배급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이고, 비공식 부

2) <표 3>은 에버스타트(Nicholas Everstadt)와 바니스터(Judith Baniter)가 북한당국에 협조를 얻어 추정한 북한의 인구와 노동력에 관한 보고서 North Korea: Population and Prospects는 북한의 취업구조를 보여주는 유일한 통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통계는 북한의 노동력의 구조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에버스타트와 바니스터는 이 표안의 숫자는 군인을 제외한 만 16세 이상의 모든 주민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학생, 주부, 고령자 등이 세대주와 동일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애실, 1996).

문 근로자는 수선, 세탁, 이, 미용 등의 편의봉사자와 가내작업반<sup>3)</sup>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남자의 경우 공식부문, 즉 정규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81.1%에 달하고 있고 비공식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은 1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공식부문 근로자는 58.2%에 불과하고 비공식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이 41.8%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3) 기혼여성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는 가내작업반은 행정의 말단 조직인 인민반 내에 어린이들이 많거나 복잡한 사정 때문에 노동일선에 참여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각자의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주어 책임량을 수행하도록 하는 작업반이다.

1958년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대책'이라는 결정을 채택한 이후부터 본격화된 가내작업반은 가정주부·노인·어린이들의 유희노동력을 철저히 동원하려는 정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계획량, 책임량, 작업과정 등이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다.

즉, 도,시,군 등의 지방공업과 가내작업반을 연결시키는 조직망이 편성되어 있으며 가내작업반장을 겸한 인민반장이 해당 단체의 지시에 따라 주 1회 또는 하루 한 번씩 지정된 곳에서 일감을 받아다가 작업반원들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공장이 지정된 시일내에 계획량을 완수하지 못할 때는 이른바 '돌격운동'을 앞세워 가내에서도 철야작업을 벌여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가내작업반은 작업량에 따라 규정된 임금을 지불하고 있으나 일반노동에 비하면 훨씬 싼 값을 지불하고 있으며, 식량배급에서까지 직장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백그램을 배급하고 있어 저임금착취의 체제적 모순을 반증해 주고 있다. 더구나 고위층 간부의 주부는 이 가내작업반에서 제외되고 있어 또 하나의 특권계급이 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여기에는 직장을 안 가진 가정주부와 노인들이 대상으로 동원되는데, 가정에 있는 주부나 노인이라 하더라도 가내작업반, 고철수집 및 각종 학습에 참가해야 함으로 실제의 시간은 남아돌리 없지만 이 인민반 노력동원에는 주 1회이상 참가해야 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인민반 노력동원 현장은 도로공사, 건설장, 하수도 공사 등 대부분 힘든 작업에 속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2~4킬로미터 멀리까지 작업장에 동원되어야 하며 완전 무보수로 봉사하면서노동에 필요한 연장은 각자가 장만하여 지참해야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갖가지 명목의 노력경쟁운동을 전국적 범위에서 벌려 여성들의 노력동원에 혈안이 되어있다. (숙대 통일문제연구소,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의 참모습, <http://women.or.kr/unification/economic/equality01>)

<표 3> 만 16세 이상 직업별 남녀 노동자 구성비 (1986-7)

단위: 천명, ()안은 %

	1986			1987			여성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986	1987
국영기업노동자	6,830	2,990	3,840(55.2)	7,135	3,134	4,001(57)	56.3	56.1
공무원 및 사무원	2,060	855	1,205(17.3)	2,103	879	1,224(16.8)	58.5	58.2
농민	3,141	1,305	1,836(26.4)	3,167	1,312	1,855(25.3)	58.5	58.6
협동기업노동자	110	41	69(1.0)	112	42	70(0.9)		
합계	12,141	5,191	6,950	12,517	5,367	7,150	57.2	57.1
비율(%)	100	42.8	57.2	100				

자료: KDI 북한경제연구센터, [북한의 인구동향과 전망] 표 27, 선한승 1995 [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에서 재인용함.

<표 4> 북한의 성별 노동력 분포 (1986 추정치)

만 16세 이상인구 12,141천명	여자 6,950천명 (57.2%)	공식부문 근로자 4,045천명 (58.2%)	가내작업반 편의봉사자 경제선동대
		비공식부문근로자 2,905천명 (41.8%)	
남자 5,191천명 (42.8%)		공식부문근로자 4,211천명 (81.8%)	
		비공식부문근로자 980천명 (18.9%)	

자료: 김애실, 1996

위의 통계에 나타난 북한의 여성취업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만 16세 이상 노동인구가 57.2%가 여성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군인을 제외한 생산연령 인구의 57.2%가 여성이고 42.8%가 남성이라는 통계는 북한에서 여성노동력이 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전체 노동력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1988년도 북경방송(1988.3.6)과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북한의 [조선여성] 편집국장 정명순, 그리고 리경혜등에 의하면, 현재 북한의 전체 노동력의 48 ~ 49%가 여성이라고 한다. 이는 북한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두개의 수레바퀴 중에서 하나를 돌리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김애실, 1997).

둘째, 성에 따라서 직업구성비가 크게 달라지는 성별 직업분리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는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여성의 노동력 분포를 보면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농업과 경공업, 교육, 보건, 편의봉사, 사무원, 상업유통 등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직업별 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정무원 부장 0.7%, 대학교수 15%, 최고인민회의 의원 20%, 고등학교 교원 30%, 기술계통학교 교원 30%, 전문가. 기술자 35%, 의사 45%, 경노동자 70%, 사무원 70%, 인민학교 교원 80%, 상업유통 73%, 유치원 교양원 100%, 미용사 100%, 방직공장 노동자 100% 등이다.) (김애실, 1996)

노동력의 이러한 산업별 직종별 분포는 노동력의 배치원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근로자의 희망은 고려되지만 중앙집권적 노동력 배치 계획에 따라 직업이 배치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해방이후 북한 당국이 고수해 온 노동력 배치원칙은 여성들을 '쉽고 험한 일'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여성노동력 분포는 여성의 일을 쉬운 일 보조적인 일로 보려는 가부장적 사고가 직업배치의 원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것은 북한이 반세기 동안 여성해방의 실현을 위해 여성의 노동계급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남성 보조적인 데 머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2). 평등권의 현실

### 가. 임금구조

다음으로 임금구조를 살펴보자. 임금(생활비)은 국영기업소 노동자, 사무원 등에게 지급되는데 직책별로 보수가 다르다 (<표 5> 참조). 또 협동농장 농민은 연말 결산분배시 당해연도의 농작물 수확량과 노동일수 등에 따라 소득을 분배받고 있다.

사회주의 노동법 제 37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현실적으로 노동의 차별화에 의한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 북한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급수가 높을수록 많아지며 노동강도가 강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여성들은 대다수가 낮은 급

수의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즉 여성들은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경시되는 직종, 보다 손쉬운 작업장에 비숙련노동자로 집중배치되어 있어 직종분리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6>은 이를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다.

<표 6>에 따르면 피혁, 제사, 방직 등의 섬유 및 의류산업 등 경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70% 정도가 여성들이다. 그런데 이들 경공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60원 선이다. 그 다음으로 인민학교 교사, 보육원, 교양원, 간호사 등 여성들이 집중배치된 직업의 평균임금은 70원 선으로 사무원과 별 차이가 없다. 비교적 많은 임금을 받는 대학교수나 간부, 기업소 지배인 등에는 여성의 비율이 낮는데 이들의 임금은 180-200원선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여성들의 임금수준은 하위에 머물러 있다.

### 나. 근로환경

한편 북한 여성들은 직종분리로 인한 임금차별 외에도 승진기회에서의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전체 노동력 중 여성노동력이 49% 정도나 됨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에 있는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은데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적인 노동에 참가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직장배치의 결정권자인 당이 여성들의 경우보다 낮은 기술과 숙련도를 요하는 직업, 비교적 사회적 평가가 낮은 직업에 배정해 줌으로써 임금과 승진기회에서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노력의 합리적 배치'란 명제 아래 권장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북한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정하고 거기에는 여성들을 배치하는 동시에 '험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노동자들을 그들의 힘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종에 배치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정규직장보다 연금 등의 추가혜택이 없는 가내작업반이나 무보수 지원반에 더 많은 여성들을 동원하는 등 여성의 노동조건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수준에서 유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남녀평등정책을 적극적으로 주창하면서 여성노동력을 생산현장으로 조직화시키기는 했지만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남성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선한승, 1995, 35-37쪽)

<표 5> 주요 계층별 임금수준 (단위: 북한원)

	직책	보수
당정기관	당 정무원부장	300-350
	정무원 부부장급, 도인민위원장급	25-300
	도인민위 부위원장 및 군인민위원장급	170-200
공장/기업소	특급기업소 지배인	250-300
	1-2급 기업소	150-200
노동자/사무원	광부, 제철, 제련공	90-100
	일반기계공, 운전기사	75-80
	일반노동자	70-80
	사무원	60-70
편의시설기관종사자	여관, 식당, 이발소, 상점 등	50-80

자료: 통일원, ['92 북한개요], 286쪽, 선한승 1995에서 재인용.

<표 6> 여성의 주요 직종과 평균임금

직종	평균임금	여성비율 (%)
경노동자	60	70
사무원, 간호사, 보육원, 교양원, 인민학교 교사	70	80
중노동자	90-100	20
의사	60-150	미상
기업소 지배인	180	미상
대학교수	190	15
정무원 부부장	300	미상
정무원 부장	350	0.7

자료: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1991, 203쪽; 내외통신 448호 (1985.8.16.).

3) 북한 여성노동의 문제점들

북한 여성노동의 현실에 대한 위의 논의를 중심으로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의 면에서 북한의 직장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는 성별분업의 문제이다. 북한여성의 노동권이 남성과 동일한 권리와 임금을 받는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종사하는 직업의 분류상 성별 분리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의 취업실태를 보면 대학교수, 정무원 부장, 탄광, 지하노동자, 중공업 노동자, 등은 남성 집중적인 직업이며, 섬유산업, 경노동자, 사무원 간호사, 보육원교양원, 인민학교 교사, 상업유통, 편의 봉사 등은 여성들이 주로 집중되어 있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치원 교사, 간호원 미용사, 방직공 등에 종사자는 100%가 여성이며, 농민은 60%가 여성이다(임순희, 1997).

1962년부터 시행된 노동력 재배치 정책으로 노동환경이 거칠고 완력을 필요로 하는 중공업 분야에는 주로 남성을 배치하고 있어 북한에서도 남한보다는 적지만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을 분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4)</sup>.

둘째는 여성의 저임금 문제이다. 북한에서 경한 노동의 경우 중노동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여성들은 실제로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결혼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주로 가내공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내공업은 작업량에 따라 규정된 임금을 지불하고 있으나 일반노동에 비하여 훨씬 싼값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노동은 가정내의 부수입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직장내 성희롱 등 근로환경과 차별의 문제이다. 북한에는 성희롱 등을 규정하는 법이 없고 그러한 용어가 사용되지도 않으며 사람들이 그러한 용어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일부 탈북자들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그러한 현상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성희롱이라면 직장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조순경, 2000, 재인용).

그외에도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여성의 인권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법적인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지만 사적인 가정의 영역에서 여성들의 인권은 가정내에서의

4) 여성들에게는 비교적 쉬운 노동이 분담되고 있지만 성별분업에서 탈피하여 여성들이 남성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사례들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석탄캐는 착암수는 1960년도에 위원광산에서 '노력영웅'으로 호칭된 여성노동자 이연옥을 중대장으로 하는 중대를 처음으로 조직되었는데 그 이후 여러 광산촌에 여성 착암수중대가 확산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거의 해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여성노동력의 성과중 하나로 여성트랙터 운전수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1953에서 1958년까지 집단 농업 협동화를 완성한 이후 농촌의 기계화 사업에 여성트랙터 운전수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로하여 해양교육을 실시한 후 성적에 따라 여성을 선장으로 배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선박운영의 기술부족과 어로노동의 무경험, 힘의 부족등으로 실질적 성과는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의 참모습, 숙대 통일문제 연구소 연구자료 <http://women.or.kr/unification/economic/equality>).

가사노동의 분담정도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북한이 끊임 없이 남녀평등을 위한 제반 사항을 만들어 왔지만 가정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특별히 향상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먼저 자녀양육의 문제와 관련하여 1960년대 들어 북한에서는 가정의 혁명화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어머니 역할이 강조되면서 김일성은 자녀교육에서 어머니의 모범이 일차적인 영향력을 지니게 되므로 "혁명적 어머니"가 되어 자녀가 올바른 공산주의자가 되도록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어머니 학교가 설립되었고 여성들은 자식들을 양육하는 전통적인 담당자의 위치를 분명히 하게 되었다. 사회가 자녀의 교육을 공적으로 담당한다 하더라도 가정내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주체가 여성임을 공인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자녀교양에 있어서 남성의 위치를 배제함으로써 여성들의 성별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여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일차적이기는 하지만 남편들도 아버지로서의 자녀양육의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가정내의 평등을 실현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 ).

다음으로 가사노동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남편과의 관계가 "사회주의적인 동지"로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대부분 여성들의 차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성들도 가사노동을 당연한 자신의 일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탁아소와 유치원 그리고 밥공장과 반찬공장이 여성들의 가사노동을 일정 정도 줄이고는 있지만 가사영역의 책임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떠맡겨 지고 있다. 탈북자들의 수기에 따르면 신세대 남편들은 가사노동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사회의 전반적인 추세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가족구성원 사이의 성적 평등이 이루어지려면 북한남성들의 적극적인 가사노동 분담이 필수적이다. 또한 최근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여타 공장의 가동이 어려워지면서 여성들의 가사노동의 양이 많아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밥공장 반찬공장에 의존도가 높았다가 지금은 식량부족으로 공장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 )

이상 북한의 노동권과 평등권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적극적인 인권개념에서의 사회경제적 권리는 적어도 법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령과 정책적 입안이 여성의 실질적 평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평등이 실현되어야 진정한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적인 영역에서의 불평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3.3 남북한 여성의 노동권 평등권의 비교논의

여성관련 주요 남북 노동법 규정의 비교는 위의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남북한 여성노동의 현실을 비교해본다는 것은 체제의 차이, 경제정책 및 노동정책의 차이, 경제구조와 여건의 차이 등 뿐만 아니라 자료의 차이 때문에도 또한 어렵다. 그러나 위의 논의를 중심으로 남북한 여성의 노동권 평등권을 거칠게라도 비교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유사점으로는 첫째, 성별분업과 가부장제 구조가 남북한 모두에 뿌리깊게 박혀 작

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쪽이 더 심한가를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남한에서는 이에 대해 활발한 문제제기가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 쪽이 더 심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 유사점으로는 남북한 모두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법은 너무나 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성별분업, 저임금 등에 처해 있다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남한의 경우에도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많은 법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법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여성들이 성별분업과 각종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차이점으로는 위에서 어느 정도 암시가 되었지만 여성의 평등권, 인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여성의 노동권, 평등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문제제기에 있어서 남한 쪽이 훨씬 더 활발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의 성찰성 고양과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남한에서 여성학이나 여성운동이 훨씬 더 발전해 있고 활발하기 때문일 것이다.

## 4.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여성인권의 문제는 무엇인가?

### 4.1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변화와 문제는?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여성인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변화와 문제가 무엇인지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변화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미리 가정하고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다. 이것은 통일의 형태와 방향이 어떠한 것인가? 단계별 남북 교류방식은 어떠한 것인가? 단계별 교류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등에 대한 가정들이다. 이런 가정들에 기반하여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인권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통일의 형태와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본다면 2000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통일의 방향은 급진적 통일보다는 점진적 통일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틀고 있는 것 같다.

다음으로 통일과정이 점진적 통일 쪽으로 간다면 이는 어떤 단계를 거칠 것이며 각 단계별 교류방식은 어떠한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통일단계별 경제 인적 교류방식과 교류내용의 소개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여기에 소개한다 (<표 7> 참조). <표 7>에서 보듯이 점진적 통일과정에서는 통일이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의 3단계를 거치면서 서서히 진행, 발전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표 7> 통일단계별 경제 인적 교류방식과 교류내용

단계		교류방식	교류내용
1단계: 화해 협력단계	신뢰 단계	1. 간접교역 2. 직접교역	-제3국을 통한 물적교류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 -무역협정체결하에 본격 물적 교류 -후기: 인적교류(경제인, 기술자) 시작
	협력 단계	1. 산업협력 2. 합작투자(간접투자) 3. 직접투자 4. 공동사업	-산업간 수직적 분업(단순 입가공) -노동집약산업의 북한 이전 -남한은 자본과 기술제공: 북한은 자원 과 노동력 제공 -설비제공 입가공, 제품판매 -장단기 신용차관의 제공 -합영기업 설립으로 남북 공동운영 -단독투자 -사회간접시설 (도로, 철도, 통신시설) 등 공동건설 및 이용
2단계: 남북연합단계	동화 단계	1. 부문별 경제통합 2. 자유무역지역 형성 3. 관세동맹 4. 남북한 공동시장	-실익있고 조정가능한 부분통합 (예: 철강, 석탄) -산업구조조정 -관세 철폐, 무역제한 철폐 -공동관세정책 -상호 시장개방 -생산요소 자유이동
3단계: 통일국가단계	통일 단계	1. 경제통일 2. 정치동맹 3. 사회통합	-인력, 재화 및 서비스의 완전 이동 -단일통화 창출 -공동체 중앙은행 설립 -경제정책 통일 -단일국가 창출 -남북 총선거 실시 -정치 행정제도 통합 -노동관계 통합 -사회보장제도 통합 -남북 동질성 회복 -남북 차별의식 배경

자료: 원창희, 김재원, 1994, "남북한 인력양성체계와 효율적 인력활용방안", 노동경제논집, 한국노동경제학회.

여기에서는 이 3 단계 중 1단계 즉 화해 협력단계와 2 단계 남북연합단계는 통일이전의 교류단계로 볼 수 있고, 3단계 즉 통일국가단계는 통일이후의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통일이전의 단계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보기로 한다.

이러한 점진적 통일과정에서 통일이전의 단계에서는 일차적으로 남북한간에 화해와 협력을 중심으로 한 교류가 주를 이룰 것이고 경제교류와 협력 또한 활발해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교류내용과 경제협력의 내용은 주로 남한의 자본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 때 북한에 들어가는 남한의 자본과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 이것은 심중팔구 주로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갈 때 남한의 기업규모를 그대로 두고 기업을 북한에 확장하는 형태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기업규모를 줄이고 북한으로 기업을 옮기느냐에 따라 그것이 주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 4.2 통일이전의 교류단계에서의 여성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면 이러한 남북한간의 교류활성화가 남북한의 여성노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많은 연구자들이 남북한간의 교류활성화가 남북한 여성노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에 논의한 통일과정에 대한 가정을 분명히 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즉 점진적 통일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점, 또 그 과정안에서도 통일이전의 교류단계에 초점을 둔다는 점, 그리고 어떤 기업이 들어갈 것이며, 그 기업이 남한의 기업규모를 그대로 두고 확장하는지 아니면 남한의 기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1) 남한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가정에 기반하여 통일이전의 교류단계 즉 1, 2 단계,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에서는 이런 교류활성화가 남한의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지 논의해보자.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남한 여성노동의 실업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 이유는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즉 북한에 들어가는 남한 자본과 기업이 여성노동을 주로 활용하던 기업이기는 하지만, 남한내 사업체를 그대로 둔 채 동남아나 다른 지역에 지사를 내는 것처럼 북한에 진출하는 경우 남한의 여성노동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남한여성의 임금, 근로조건, 환경 등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이 별로 없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남한여성노동의 실업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북한에 들어가는 남한 자본과 기업이 여성노동에 주로 의존하던 기업인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남한내 사업체를 축소하고 북한에 진출하는 경우, 남한의 여성노동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남한여성의 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와 함께 여성들의 임금, 근로환경 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발생한 경제위기하에

서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기억할 때, 경제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 북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의 규모줄이기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이에 따라 남한 여성들의 상황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북한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

통일이전의 교류단계 즉 1, 2 단계에서는 북한여성의 경우에도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는 남한여성의 경우와는 좀 다를 것 같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여성의 취업기회 증가나 실업 증가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 이유는 북한에 들어가는 남한 자본과 기업이 기업의 성격상 북한 내에서 남성노동을 선호하는 경우 북한여성노동에는 별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여성의 취업기회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많은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함으로써 전반적인 취업기회가 늘어날 수 있고, 또 비록 이런 기업들이 경제특구와 같은 특정지역에 제한되어 있어 북한 여성들이 이에 자유로이 이동해서 출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취업기회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 4.3 통일이후의 여성인권 에 미치는 영향은?

### 1) 남한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

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남한의 관련법들이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의 사상에 입각한 북한의 노동관련법들의 영향을 받아 보다 평등한 모습을 띠 가능성 있다.

그러나 통일이 된 후 남북한 간에 체제통합이 이루어지고 경제체제 또한 어떤 모양이든 자본주의 방식으로 통합된다면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예상되고 특히 많은 북한남성노동력의 남한으로의 이동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남한여성의 실업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고용조건, 복지 등은 전보다 후퇴할 수 있다. 이것은 남북한 출신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사회통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먼저 남한 여성의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북한남성들의 남한에서의 구직 증가 및 기업들의 남성노동 선호로 남한여성의 취업기회가 상대적 축소되고 취업여성이 실업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률의 증가 및 취업기회의 상대적 축소는 여성의 평등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컨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이나 근로환경, 차별 문제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 2) 북한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

실업문제, 빈곤문제 그리고 인구이동 문제는 통일 이후에 당면 할 중요한 문제들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통일 이후에 북한 여성이 당면할 커다란 문제가 무엇인가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실업문제와 여성노동권의 문제

북한여성노동의 경우에는 다시 두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여성들이 대량실업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 노동은 의무이고 권리가기 때문에 "실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통일 이후에 북한에서는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들이 많이 있기 통일이 된 후 북한체제가 어떤 모양이든 자본주의 방식으로 변한다면 북한여성의 실업은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통독후 구 동독여성의 실업률이 높아졌던 것과 비슷한 현상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통일 이후 북한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가 갖는 경제의 비 효율성과 북한의 산업구조 및 직업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사회주의하에서는 노동자의 약 20% 정도가 초과 고용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공장, 기업소, 농장들도 필요 이상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과 고용된 노동자들을 해고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애실, 1997).

또 북한의 경쟁력 없는 기업들과 공장이 문을 닫을 때 대량실업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 관리직, 사무직 일자리들도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공산주의적 인간의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에 종사해온 각급 학교 교원들도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또 현재 120만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군인들이 통일 이후 일반노동력으로 전환되면 실업자수는 엄청나게 많아 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북한의 노동력 구조상 여성들의 집중도가 높은 경공업부문, 사무원, 인민학교 교원 등이 바로 통일 이후에 대량실업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노동력의 구조는 통일 후에 북한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의 남성중심적 문화는 여성의 실업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즉, 통일 이후 심각한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성들의 가정복귀와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을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제도적 장치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 남성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여성의 모성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여성들의 가정복귀를 유도한 역사적 사례는 많이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여성의 역할은 가정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으며,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업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여성노동자의 산전산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시킨 것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산전산후휴가 기간

을 150일로 연장한 것과 가내작업반을 활성화시킨 것은 경제침체로 인한 과잉노동력의 해결 방안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의 심각한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성의 가정복귀를 중용하며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북한 여성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제공될 가능성도 있다. 남한의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북한으로 이주하고, 생필품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에서 통일 이후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 생산과 유통부문에 많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나. 여성평등권의 문제: 취업여성의 육아문제

북한의 여성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여성을 가사와 자녀양육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학령전 어린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고 출산비용, 산전 산후 휴가비용 등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 이후에도 탁아비용과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적 부담으로 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모성비용을 개별 기업이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업체들은 여성의 채용을 꺼린다고 한다. 통일 후 우리경제가 육아와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부담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상당기간 동안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생산설비를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아문제는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의 장애 요인으로 다가올 것임이 분명하다 (김애실, 1997).

### 5. 요약 및 결론: 여성주의적 개입의 필요성

이 글에서는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우리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변화가 사회경제적 차원의 여성인권에 어떤 변화를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여성의 인권을 노동권과 평등권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런 개념규정에 입각하여 둘째, 북한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은 어떠한가에 대해 법과 현실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남북한의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을 비교해보아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 보았다. 셋째,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변화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것이 남북한 여성노동, 즉 사회경제적 차원의 여성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영향 중 남북한 여성의 실업문제와 임금, 근로환경, 육아의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이제 끝으로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사회경제적 차원의 여성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모색해보기로 하겠다. 남북한 여성노동권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과 교류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남성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여성이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여성주의적 개입의 목표는 법적 차원, 현실적 차원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을 보장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임금, 근로환경, 육아 등 직장가정의 양립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여성주의적 개입의 방법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미 다른 곳에서도 주장된 적이 있지만 (조순경, 2000)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한 경제협력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여성들의 노동권과 평등권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많은 기업이 북한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할 경우에 남한에서의 새로운 고용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남북한의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양성평등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모든 이에게 있어야 하겠지만 특히 남성들, 특히 지도층과 고위층 남성들에게 고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애실 1996 "경제체제와 남북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여성의 삶에 대한 비교, 이대 한국여성연구원  
김애실, 1997 "남북한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전망,"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숙대 통일문제연구소, 1997. 11. 6.  
김영문 2000 "독일통일 이후 노동법 적용경험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토론회 [남북협력시대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제] 발표논문  
김영문 2000 "남북경제협력화와 대북 노동정책의 방향," 한국노동연구원주최 [남북협력시대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제]에 관한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문무기 2000 "남북한 노동법제의 비교분석을 통한 법 제도 정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토론회 [남북협력시대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제] 발표논문.  
선한승, 조명철 외 2000 남북협력과 노동정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 1995 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 1998 남북한 노동제도의 비교와 노동정책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 1998 "남북경제교류와 노동제도의 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남북경제협력과 노동정책에 관한 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1998. 6. 10.  
숙대 통일문제연구소 <http://women.or.kr/unification>  
심영희 1998 "여성의 인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서울: 나남.  
원창희 김재원 1994 "남북한 인력양성체계와 효율적 인력 활용방안," 노동경제논집, 한국노동경제학회.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1991,  
임금숙 1999 "북한의 식량위기와 북한여성의 경제활동," 북한의 식량위기와 여성, 이대 한국여성연구원, 1999. 12. 10..  
임순희 1997 "남북한 여성의 가치관,"  
조동호 1993 "북한의 노동생산성과 적정임금---북한 노동력의 질에 관한 고찰," 계간 한국

개발연구 15권 4호.

조동호 1998 “대북 투자시 효율적 임금관리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남북경제협력과 노동정책에 관한 세미나], 1998. 6. 10.

조순경 2000 “가부장적 시장경제와 가부장적 계획경제의 만남: 남북경제협력과 여성노동,” 한국여성학회 월례발표회 자료집, 2000. 9.23.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성심관 소강당.

통일연구원 2000 [북한인권백서]

통일원 1995 [’95 북한개요]

한상진 1996 “인권논의에서 왜 동아시아가 중요한가” 사상 겨울호, 특집: 동아시아의 성장과 인권.

##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이김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 시작하는 말

한반도에 몸붙이고 살아 오면서 내가 처음 ‘인권’이란 단어를 의미 깊게 들은 것은 70년대 들어서다. 70년 11월에 평화시장의 노동청년, 전태일(22세)이 분신 자살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호소하기 위해 선택한 죽음이었다. 1970년대 초는 경제, 정치, 사회적 모순이 심화.확대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던 때였다. 한 청년의 분신을 통해 비로소 한국사회는 근대화 프로젝트의 희생제물이 되어가던 노동자들의 인권상황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전태일의 죽음은 이후 노동자, 도시빈민, 대학생, 지식인, 종교인, 재야 인사, 여성계 등의 거센 체제 저항운동을 견인해 내는 동력이 되었다. 그에 대한 군부의 대응은 1972년 10월 유신의 단행과 독재체제의 구축이었고 이후 한국사회는 긴 저항 투쟁의 시기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민주화투쟁과정에서 수많은 인권유린 사태가 터져 나오게 된다. 인권담론이 종교계를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무렵부터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를 중심으로 1973년부터 ‘신앙과 인권’을 주제로 한 협의회가 열리고 1974년부터는 단체들 조직 속에 ‘인권위원회’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배태된 ‘인권’이란 단어는 사회적으로 매우 불경스럽고 위험한 의미구조를 띠게 되고 이 문제와 친화력이 있는 단체들은 위협시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나 개인에게 각인된 인권의 개념은 ‘독재권력으로부터의 자유 확보’라는 자유권의 개념이 전부였다.

‘평화운동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80년대 중반의 반전, 반핵운동이었다. 1980년대 들어 대학가에는 ‘민족 생존과 한반도의 핵무기’ 논쟁이 뜨거웠다. 85년 4월에 서울대학생 김세진, 이재호군이 ‘반전, 반핵을 외치며 분신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핵평화운동은 고조되고 있었다. 당시 원폭피해자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던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해마다 8월이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 일에 ‘반전, 반핵, 평화마당을 열고 이들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대규모 대중행사를 벌였다. 이 행사에는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피해자들과 김세진 군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환경단체운동가들이 빠짐없이 참석했다. 반전, 반핵, 평화마당에는 1000여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 김세진, 이재호를 외치며 반전 반핵 평화운동의 결의를 다져 나갔다. 80년 대는 유럽의 반핵평화운동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였고 유엔도 1986년을 평화의 해로 선포했던 시기였다. 반핵문제로 집약되던 세계

평화운동 조류는 한반도에 상륙, 한국의 핵무기 배치상황, 한반도에서의 국지전적 핵무기 사용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 사용결정권의 문제점,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를 희생물로 만들 가능성, 핵발전소의 사고위험성과 한반도의 핵 기지화 등의 문제를 사회 문제로 부각시키는 반핵평화운동을 활성화시켰다. (그후 1991년에 우리는 노태우정부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선언'을 듣게 되었다.)

80년대 초 여성의 전화 조직을 필두로 진보적 여성단체가 조직되기 시작하고 이후 실질적으로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운동들이 다양하게 분화되지만 여성운동 전반에서 인권담론이 모색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부터라 생각된다. 평화운동은 80년대 말부터 기독교 여성들을 중심으로 군축운동, 통일운동의 싹을 키웠지만 여성운동 전반에 평화관점을 반영시키는 데까지는 발전되지 못했다. 성인지적 관점이란 말이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것도 1990년대 중반이후로 기억된다.

이상의 개인적 경험이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을 담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인권운동, 평화운동 흐름이 한 개인에게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가를 통해 그 전체 흐름을 대강 엿보게 될 것이다. 이런 기억에 의존하면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나 '평화'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에 관한 논의들은 90년대 말 이후에 등장한 주요 주제들이다. 실제로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를 전후해서 '여성의 주류화', '성인지적 관점'이란 개념이 우리 사회에 등장했지만 그것을 인권담론, 평화담론에 체계적으로 접목시켜 논의한 궤적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 최근 열리고 있는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와 '인권학술회의'가 이 작업을 비로소 시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시론적 성격을 갖는다.

우선 이 글은 '성인지적 관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살펴보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평화 의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평화의 개념은 전쟁, 군사, 무력갈등 및 폭력 등의 반대개념으로서의 소극적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에서 여성들이 겪은 반 평화적 체험을 탐색해 볼 것이다. 여성들의 체험은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상태를 극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체험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문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작업은 여성들의 평화운동이 평화운동의 한 부분운동이 아니라 여성운동과 평화운동이 통합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게 될 것이다.

## I. 성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

### 1. 성인지적 관점

'성인지적 관점'이란 말은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여성학의 전문용어다. 이 말을 이해

하려면 우선 '성(性)'이란 말에 대한 여성학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여성과 남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구별된다. 하나는 생물학적으로 구별되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역할과 특성으로 차별화된다. 영어에서는 생물학적 특징에 의해 구별되는 성을 섹스(sex)라는 말로, 사회적 특징들에 의해 차별화되는 성을 젠더(gender)라는 말로 달리 개념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말로는 두 단어 모두 성(性)으로 번역되어 때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젠더(gender)라는 용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해의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그 관련 용어들 몇 가지만 보면 아래와 같다.

gensder analysis(성 분석),  
 genser audit(성 회계감사),  
 gender-based violence/sexual violence(성에 기반한 폭력/성폭력),  
 gender blind(물성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gender contract(성 계약),  
 gender dimension(성 차원)  
 gender disaggregated data(성별 분리 자료),  
 gender equality(성 평등)  
 gender equity(성 형평)  
 gender mainstreaming(성 주류화)  
 gender perspective(성관점)  
 gender planning(성 관련 기획)  
 gender distribution of paid and unpaid work(유급/무급 노동에 대한 성별 분포)

이 단어들은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가 발간한 양성평등에 관한 100가지 용어풀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중의 일부다. 이 책자에서 젠더(gender)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성(gender) :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가 아닌 사회적 차이를 일컫는 개념. 이러한 사회적 차이는 학습되어지고, 시간에 따라 변화되며, 문화권 내부와 문화 간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

젠더(gender)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그 안에 포함된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 특징과 양성(sexes)간의 사회적 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이다. 우선 문화마다 사회가 규정해 놓은 남성과 여성의 특징들이 있다. 남

성다운 특징, 여성다운 특징들은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사회적 디자인으로써 사회마다 공. 사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맡겨진 과제, 기능, 역할의 개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개인들은 태어나면서 부터 한 사회가 규정한 성역할, 성 규범, 사회적 기대를 내면화함으로써 그 문화가 규정한 남성다운 남자와 여성다운 여자로 구성된다.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젠더(gender)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정의일 뿐 아니라, 또한 양 성(sex)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정의이기도 하다. 이 구성물은 삶의 영역 전반에서 일어나는 남성지배 및 여성종속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담고 있다. 남성과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 역할, 기능 및 가치는 여성과 그들에게 부과된 과제, 역할, 기능 및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 남성적 규범이 사회의 중심 규범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정책과 사회구조에 반영된다. 이런 정책과 사회구조는 의도하지 않아도 성불평등을 재생산한다.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 gender perspective) 또는 성 관점(gender perspective) 이란 우선적으로 젠더의 이런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인지적 관점은 성문제에 민감한 태도, 관점으로써 성별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성에 의한 차별이나 격차 현상에 대해 늘 의식적으로 직시 하는 동시에 이제까지 무시되어 왔던 여성적 시각, 여성 관련 자료들을 사회적 현상과악에 채택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

'성인지적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개념의 발전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성 주류화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국제문서에 등장한 것은 1985년에 열린 제3차 유엔 세계여성대회(나이로비) 직후 개최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the 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의 여성과 발전에 대한 논쟁에서였다. 유엔은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선포후 세계의 경제사회발전의 주류에서 제외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을 위한 특별사업을 설정하여 여성을 사회발전에 통합시키려는 WID(Women in Development)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성 평등 관점을 기존 현실에 적용하여 성차별적 측면을 시정하기 위한 특별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되었다. 가족계획이라든가, 건강관리, 영양, 소득증대와 같이 여성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성 평등을 위한 정부기구를 만들고 성차별금지법 등을 강제하였다. 그러나 곧 WID전략은 남녀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1985년 나이로비 제3차 세계여성대회 이후 유엔은 이 전략을 GAD(Gender and Development) 전략으로 바꾸었다. 여기에는. 기존의 WID 전략이 법적 평등에 불과했다는 점, 이 전략이 사회주류 외부에서, 고립된 성 평등 기구에서 진행된다는 점,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지위가 취약한 점, WID 여성정책이 여성의 특수한 욕구와 여성만을 대

상으로 한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작용했다. 결국 WID에서는 여성정책이 발전정책의 주류에 속하지 못한 채 주변에 머물고, 사회발전과정에서 남성은 행위자로, 여성은 수혜자로 머물렀다는 것이다. WID 정책은 기존의 발전의 틀 안에 여성을 머물게 하면서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전략이었다. 따라서 GAD 전략은 발전의 틀 자체를 성 인지적 틀로 바꾼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었다. WID가 기존의 발전 틀 안에서 여성을 위한 자원의 재분배를 요구한다면 GAD는 자원분배의 일차적 결정과정 자체가 양성간에 공평하게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 WID가 가부장적 발전이 결과한 남녀불평등의 시정을 요구한다면 GAD는 정책결정과정의 탈가부장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이다. (이혜경,42-43).

이 같은 성 주류화 개념을 개발, 1986년 여성지위위원회(CSW)는 '여성지위위원회의 미래활동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여 나이로비 미래전략의 발상을 유엔의 경제개발 및 사회발전 프로그램에 완전히 통합시킬 것을 결정하였다(보건복지정책안내, 6). 이후 유럽 각국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개념이 발전되었다. 그리고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유엔은 성 주류화 전략을 명시적인 행동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이 전략은 정부 및 기타 관계자들이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관점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며 가시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그 결정이 여성과 남성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반복,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국가적인 성 주류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주류화 전문가집단을 조직, 성 주류화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성 주류화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을 보여 왔다. 이들 주류화 전문가 집단이 제시한 정의를 보면 '성 주류화'란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이 성평등의 관점을 모든 정책의 모든 수준, 모든 단계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과정을 조직 하거나 재조직하고,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주류화 정의는 다양하지만 유럽회의는 성 주류화를 정책과정의 변화로 정의하고 성인지적인 관점이 모든 정책 행위자들에게 내재화되어 정책결정이 양성 평등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과 성인지적 전문성을 정책결정과정의 조건으로 조직화 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UNDP 자료(1999)는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women)와 성관점의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를 구분하고 있다(Lorraine Corner). 여성의 주류화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여성의 욕구와 우선순위를 대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성 관점의 주류화는 주요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집행에서 성이 고려되게 함으로써, 여성의 욕구에 반응적인 정책이 되게 하는 것이다. 정책 자체를 재조직하여 성 평등적인 변화에 우호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는 전략이다. 로레인 코너에

따르면 성 주류화를 위해서 두 가지 도구가 필요하다. 사회발전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상이한 영향을 분석하는 성 분석(gender analysis)과 성 통계(gender statistics)의 활용 방법이다. (이혜경,45) 젠더 관점이 통합되면 모든 상황분석이나 정책은 성인지적 분석(gender-aware analysis)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우선적으로 질문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토결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대답이 나오면 여성의 불이익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정책이 개발되고 실행되는 방식이 전면적으로 재조정되거나 또는 일부분의 재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요컨대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면 계획 단계부터 남성과 여성 각각의 상황에 초래할 수 있는 효과를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따져 보게 만든다.

## 2.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평화 의제

성인지적 관점의 발전과 성주류화 전략에 따라 획기적 발전을 이룬 두 분야가 있다. 인권분야와 평화분야가 그것이다.

나이로비 여성대회 이후 여성들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기존의 국제인권법과 주류 인권운동계의 여성인권에 대한 불감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여성인권 논의는 기존의 주요 국제인권협약들이 모두 성평등을 천명하고 있지만 이는 명목상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인권 논의에서 여성을 배제하여 왔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예컨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토의할 때도 '신체의 자유'나 '생명에 대한 권리' 속에 여성이 매일 당하는 폭력의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Bunch,1991 신혜수, 477쪽)

여성계의 성인지적 비판은 1993년에 열린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와 1995년에 열린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를 통해 '인권운동의 여성화(the feminization of humanrights movement)' 라는 바람을 불러 일으킬 만큼, 여성인권운동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는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 속에 여성인권문제를 통합시키고 유엔과 모든 국제기구 등 인권관련기구와 조약에 여성인권이 주류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도 베이징 선언을 통해 '여성과 여아의 인권이 보편적 인권의 양도할 수 없고 완전하고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비엔나 선언을 재확인하고 (101-102) '여성의 권리는 인권(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이라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각 분야의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인 평등과 평등한 자원 접근, 평등한 결정과정 참여, 국제인권협약의 준수, 피해여성 지원 등을 행동강령에 명시했다. 이 행동강령은 모든 여성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은 여성의 힘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선포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제체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의무이며 모든 인권의 촉진과 보호는 국제사회의 합법적 관심사라고 못박았다(101).

평화문제는 세계 여성들의 오랜 관심사였다. 1975-1985년 사이에 열린 유엔세계여성대회들은 평등, 발전, 평화를 주제로 내걸고 평화문제를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시켜 다루어 왔다. 여성들은 평화의 추구를 여성향상의 통합적 부분으로 간주했으며 여성의 향상 또한 평화의 통합적이고 기초적인 요소로 간주했다. 이를 위해 평화를 증진시키고 유지하는데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요구해 왔다. 여성과 평화에 관련된 세 가지 국제적인 법적 기구도 유엔에서 만들어졌다. 1979년에 제정된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제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82년, 평화증진에의 여성 참여 선언(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Promoting International Peace and Cooperation), 1974년,전쟁중 여성과 어린이 보호에 관한 선언(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Emergency and Armed Conflict)들이 그것이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는 1988-1992년을 여성과 평화에 관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1993년에는 유엔 총회가 여성폭력철폐선언도 채택하였다.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여성폭력의 경향 특히 전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집단강간사태에 대한 대응이었다. 1990년대 들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의 집단강간과 살인문제를 다루는 여성집단과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 다루는 동아시아 여성집단들이 국제사회에 대해 무력 분쟁 하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었다.

1995년 베이징 선언과 북경행동강령은 무력분쟁과 여성이란 부분에서 '세계평화 유지, 인권보호, 민주주의 증진, 평화적 분쟁해결 등을 증진시키는 환경은 여성의 지위향상에 중요한 요소임'을 재차 천명했다(북경행동강령131). 또한 무력 및 기타 분쟁이 예견될 때는 모종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영향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관점을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냉전의 종식 이후에도 침략전쟁, 무력분쟁, 식민지나 다른 형태의 외국인통치, 및 외국인 점령, 내란, 테러행위 및 극단적인 폭력은 여전히 지구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 무력분쟁 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이 선언은 무력분쟁하에서 여성 인권의 침해는 국제인권과 인도주의법의 기본원칙의 침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북경여성대회는 평화가 부재한 무력갈등 하에서의 여성문제인식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전체 지역사회가 무력분쟁과 테러행위 때문에 고통을 받는 동안에도 여성과 소녀들은 그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그들의 성으로 인해 특별히 영향을 받는다.

\*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여성을 강간하지만 처벌받지 않으며 때로는 전쟁과 테러행위의 전술로서 조직적인 강간을 저지르기도 한다.

\* 이런 상황에서 모든 연령의 여성이 성폭력과 인권유린을 경험한다.

\* 여성들은 특히 인종청소정책 및 무력분쟁 하에서의 살인행위, 테러행위, 고문, 실종, 성적 노예제, 강간, 성적 학대 및 강제임신 등의 피해자들이 되며 이것은 전 생애에 걸쳐 사회, 경제, 심리적 장애를 초래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고 또한 그를 해체거나 무력하게 만든다.

\* 여성의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자 결과가 될 수 있다.(55-56)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역사적으로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반영으로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와 차별을 초래했고 여성의 완전한 지위향상을 막아왔다.(56)

\* 여성에 대한 폭력은 평등 발전, 평화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물이다.

\* 무력갈등 하에서 여성들은 주택과 재산의 손실, 가까운 친척의 실종, 빈곤과 가족별거와 해체 등을 겪는다.

\* 여성과 아동은 국내난민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수백만 난민과 기타 난민의 80%를 차지한다. 이들은 재산, 물건, 서비스의 박탈과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의 박탈 그리고 폭력과 불안정 등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 여성들은 탈출 중에, 피난처 및 재 정주국가에서 그리고 송환 중이거나 송환 후에 폭력과 착취를 받을 수 있다.

\* 분쟁과 과도한 군비로 영향을 받는 이들은 기초서비스투자 부족으로 빈곤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다. 특히 농촌여성들과 빈민여성들은 무기사용으로 고통을 겪는다. 전 세계적으로 64개국에 1억개 이상의 대인 살상용 지뢰가 산재해 있다. 과도한 군비개발, 무기통상과 무기생산과 구입에 대한 투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밝혀져야 한다.

\* 국가안보와 평화의 유지에 경제성장 및 여성의 힘의 증진에 중요한 요인이다. 세계적인 군비와 무기통상 및 거래, 무기생산 및 구입을 위한 투자를 포함한 과도한 군비는 사회발전을 위한 가능한 자원을 감소시켜왔다.

\* 무력분쟁 및 공동사회가 붕괴하는 기간 중에 여성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들은 무력 및 기타 분쟁 가운데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기도 한다. 여성은 그들의 가족과 사회에서 평화교육자로서 중요하면서도 인정 받지 못하는 공헌을 한다.

\*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정의와 관용을 옹호하는 평화의 문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이며 초기에 시작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분쟁해결, 중재, 편견의 감소와 다양성의 존중 등에 대한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무력분쟁하에서 여성 인권의 침해는 국제인권과 인도주의법의 기본 원칙의 침해다.

이상의 문제인식 하에 행동강령은 무력갈등 하의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목표를 6가지로 제시 하고 있다

1.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무력 및 기타 분쟁상황 또는 외국인 점령 하에 살고 있는 여성을 보호한다.

2. 과도한 군비를 줄이고 무장가능성을 통제한다.

3. 비폭력적 형태의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분쟁상황에서 인권남용의 사건을 감소시킨다.

4. 평화 문화를 배양하는데 여성의 기여를 도모한다.

5. 피난민 여성,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타 난민여성들과 국내 난민 여성에 대한 보호지원과 훈련을 제공한다.

6. 식민지 및 비자치영역의 여성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유엔은 이상의 평화 의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평화와 군축에 관련된 정책결정 기구에서의 여성의 참여에 관한 연구, 평화교육에서의 여성의 역할, 사회 내 갈등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요약하면 지속적인 불안정과 폭력의 세계에서 평화와 안보에 대한 협력적인 접근방안의 실시가 요구되며, 권력구조에서의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완전한 참여, 그리고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에서의 여성의 완전한 개입은 평화와 안보의 유지 촉진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이 분쟁해결, 평화유지 및 보호와 의무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여전히 정책 결정 직에는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이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평등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세력화를 도모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과 평화에 관련된 국제사회의 흐름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과 지침을 제공해 준다. 이때 무력분쟁하에서 여성 인권의 침해는 국제인권과 인도주의법의 기본 원칙의 침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주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II. 한반도에서의 여성체험

### 1. 한반도 평화와 인권

역사책을 들쳐 보지 않더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상황을 알리는 사회, 정치적 기호와 지표는 허다하다. 일본 천황, 일장기, 8.15, 김일성, 이승만, 미군주둔, 6.25, 기지촌, 정전협정, 판문점, 이산가족, 20만명의 군인,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백골단, 안기부, 박종철, 권인숙, 문귀동, 문익환, 임수경, 통일각, 서해교전, 북한 잠수정, 간첩, 영변 핵사찰, 미사일 발사, 매항리 미군국제제폭격장, 윤금이,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의 독

극물, 소파개정운동, 군 가산점 논쟁, 정신대,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법, 성희롱, 대인지뢰, 김정일, 민화협, 금광산 관광,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노벨평화상 등 듣기만해도 한반도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기표들이다.

한반도에 세워진 이런 불행한 기표들은 20세기 세계사 전체의 제국주의 전쟁의 시대와 이후 동서냉전시대에 뿌리를 대고 있다. 러일전쟁에 이은 일제의 한반도 점령, 한반도를 발판으로 한 일제의 만주침략,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도발, 일제의 패망과 미군의 한반도 점령, 그리고 6.25전쟁과 분단으로 이어진 평화 부재의 역사는 이후 한반도를 오랜 냉전체제의 포로가 되게 만들었다. 90년대 와서 소련이 해체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냉전체제도 일단 해소되었으나 한반도의 남북 대립은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에는 북한을 표적으로 하여 미국, 일본, 한국이 전개하는 대 북한 군사적 봉쇄, 이데올로기적 배척, 북한 악마만들기식의 낙인론, 열전으로 비화될 전쟁위 기조성, 이데올로기적 내부통제, 남북한간의 대결 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 결과 북한을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에 의해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교차승인을 거절하여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적성국과 테러국으로 지정하여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등 적대와 대결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계속되는 냉전은 언제든지 열전으로 비화될 수 있어 한반도는 전쟁위기를 상시적으로 안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양 정상간에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새 전기를 마련했지만 새로 출범한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또다시 한반도의 평화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남북간의 갈등과 북미간의 군사적 갈등의 이중구조 속에 놓인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체제로 남아 있다.

이와같이 한국 근.현대사가 일제 식민지배, 미군점령, 전쟁, 분단, 군부독재, 준 전시 체제하의 경제개발을 거치는 동안 한반도에는 국가폭력이 지속되었다. 이 국가 테러리즘은 일제 때는 독립군들을 위시한 민중들에게 자행되었고 해방이후 미 군정기엔 민족 지도자들과 민중들에게 행사되었다. 일제와 미군정을 거치면서 축적된 국가테러리즘은. (김학철, 의문사와 인권문제1099-1100쪽, 21세기의 인권) 이후 반공주의 국가 형성기로 이어졌다. 외세의 직접지배로부터, 벗어난 후에도 반공주의를 새로운 국가정체성의 중심가치로 하는 반공 국가 형성 과정에서 이미 국가는 폭력(관리 및 행사)기구의 속성을 띠어 왔으며 그러한 속성은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정교해졌다. 지배권력과 기득권 세력들은 민중들에게 굴종을 강요하고 또 이에 도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았다. 이에 항거한 이들은 고문 희생자가 되거나 의문사의 희생자로 발견되곤 했다.

특히 현대에 들어 교육과 대중매체 등 이데올로기 기구에 대한 국가(지배집단)의 장악력이 커짐에 따라 국가의 폭력성은 국내외적으로 인간의 생존과 권리를 가장 위협

하는 존재가 되었다. 적절하고 충분히 제어되지 않은 국가의 폭력성은 민중들의 생존과 인권,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연대를 송두리째 파괴하였다. 전쟁과 국가 지배력을 장악. 유지. 강화하기 위해 조작. 왜곡된 사건 등에 의해 수 많은 민중이 목숨을 잃고, 신체적, 정신적 외상과 질병을 얻고, 차가운 감옥과 도피처에서 자유와 청춘과 미래에 대한 꿈을 강탈당하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와 수난은 1회적이고 일과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 직접적인 폭력에서 목숨은 구했다 해도 위무와 보상은 커녕 감시와 차별과 모멸 속에 치유되기 어려운 신체적 . 정신적 외상과 질병으로 시달려야 했다. 손상된 자긍심을 회복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의 가족과 친지들 역시 비슷한 운명의 길을 감수해야 하는 2차적인 피해가 되었다. 그들은 비정상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기제와 장치로 그 가혹한 운명에서 벗어나려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 그러한 몸부림은 내면화되어 온 인생을 지배하게 되었다. (황상익149-150)

근.현대사를 거치는 동안 국가폭력이 지속된 한반도에는 작은 평화도 배태될 공간을 허락받지 못했다. 평화가 자라지 못한 척박한 이 땅에 삶의 뿌리를 두고 사는 민중의 삶은 그만큼 곤궁하고, 주눅들고, 상처받고, 피폐했다.

## 2. 한반도에서의 여성 체험

북경여성대회는 <무력갈등과 여성>이란 부분에서 전체 지역사회가 무력분쟁과 테러 행위 때문에 고통을 받는 동안에도 여성과 소녀들은 그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그들의 성으로 인해 특별히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파시즘이 일상화된 평화부재의 한반도에서 여성은 어떻게 특별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자.

### 가. 식민지하의 여성 체험

#### (1) 정신대 여성

일본 제국주의는 한반도 점령을 발판으로 만주 침략을 감행했고 나아가서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결국 태평양전쟁으로 확대했다가 패망했다. 20세기 전반기에는 일본의 한반도 강점이 이른바 15년 전쟁으로 연결됨으로서 동북아시아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다(강만길, 62통일시론2000봄). 전쟁에 광분한 일제는 '황군의 사기고무'라는 구호아래 종군위안부정책을 착상하고 한반도의 여성들을 대량으로 강제 동원해 가장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위안부제도를 확립했다. 당시 종군위안부는 대략 20만명으로 추산되고 그중 대부분이 조선여성이었다. 일 왕을 정점으로 하는 가부장적 군사주의 앞에서 여성의 성은 한낱 전쟁수행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었다. 힘의 논리와 남성성이 극도로 찬양되고 절대복종이 생명처럼 중시되는 전시에, 가부장제는 여성 위에 폭력으로 구현

되었다. 전후 귀국한 정신대여성들은 또 다른 폭력에 직면해야 했다. 보상은 커녕, 순결이데올로기로 무장한 한국 가부장제사회는 이들을 낙인찍어 정상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침묵시켰다. 식민지 국가폭력에 희생된 여성들은 같은 민족 속에 복귀해서 또다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이중의 시련을 안고 살아야 했다. 성폭력피해는 일생 지속되었다.

정신대문제의 본질은 일본 황군의 '성위안'을 위해 군사정부가 군대위안소(rape center, 강간센터)를 제도화하여 식민지와 점령지에 있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여 전선으로 수송하며 체계적으로 성노예화를 강요한 점이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는 국제 인권규약과 국제법이 규정한대로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다(이효재182여서이권운동사). 정신대문제는 국가가 무력으로 동원된 대규모 여성들에게 장기간에 걸쳐(몇개월에서 10년까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전시에 성폭력을 행사한 가장 잔혹한 국가폭력의 전형이었다.

## (2) 피폭자 여성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미국은 최후 수단으로 1945년 8월 6일, 9일에 일본의 군사기지였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당시 이 두 도시에는 조선의 젊은 이들이 일제의 <국가총력전>, <내선일체>, 등의 미명아래 합병, 징용공, 정신대, 군속 등으로 공출되어 강제노역을 하고 있었으며 자유거주자를 포함해 9만여명이나 살고 있었다. 그 중 5만여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4만여명이 봉대를 감은채 귀국했고 7천여명의 원폭피해자가 일본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귀국한 피폭자들 대부분은 6.25전란 중 피폭 후유증과 빈곤에 시달리다 쓰러져 갔다. 생존자 2만여명도 일본, 미국, 한국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한 채 피폭질병과 생활고 그리고 사회적 차별 속에 거의 죽음에 가까운 세월을 지탱하고 살았다. 한국 피폭자들은 일본인 피폭자들과 달리 일본 국국주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끌려가 전쟁수행의 도구로 혹사되다가 참화를 당했거나 일제의 수탈에 못이겨 생계대책을 찾아 도일했다가 피폭의 참화를 당한 이들이었다.

남녀없이 피폭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피폭후유증이었다. 팔다리가 잘린 사람 등, 귀가 떨어져 나간 이들, 눈알이 빠져나간 사람, 입 천정에 구멍이 난 사람, 전신마비, 부분마비로 거동을 못하는 이들, 정신착란자, 저능아, 간질환자, 일생, 결핵과 천식에 시달리는 사람 등 피폭후유증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괴상했다. 뼈가 썩어 내리고 지각기능이 마비되고 팔다리가 굵어지고 근육이 수축되고, 피부에 고름이 흐르고 검은 반점이 몸을 덮고 거기에 흉물스럽게 털이 자란 사람, 심한 경우 나병환자처럼 온몸이 일그러져 이웃의 혐오감을 사기 일쑤였다.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 신경통, 악성빈혈, 만성무력감, 극도의 피로감, 위장병, 구토, 두통 등에 시달렸다. 뒤 늦게 방사선 후유증이 나타나 성 불구, 불임증 등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 쭈셔 오는 아픔을 견

디지 못해 자살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또 백혈병, 암 등에 걸리 확률도 월등히 높았다.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살아가는 김필녀 여인, 10세 때 피폭을 당한 후 임신을 못하고 있는 이순엽 여인, 피폭당시 원자먼지를 마시고 만년 기관지염을 앓고 있으며 가형아 딸을 둔 이정자 여인, 30년간 빛을 싫어하며 다락방에 숨어살다 죽은 소녀, 등 이외에 여성들에게 더욱 가공스러운 것은 여성들이 빼어난 아이를 출산하는 등 피폭자들의 기형아를 출산하는 일과 불임현상이었다. 의학계에서는 피폭이 2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지만 박수복씨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2세, 3세들에게서 기형아가 나타나고 여러 피폭 질병들이 나타났다. 또한 1983년에 실시된 교회여성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피폭여성 387명 중 25.2%에 이르는 98명은 피폭이후 전혀 임신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임신을 경험한 여성 가운데 14.7%가 유산을 경험했다. 식민지 여성들로서 피폭당한 여성들은 평생을 질병, 기형아출산의 공포, 빈곤, 가족간호, 생계노동, 사회적 차별(결혼기피)에 시달리며 한 많은 삶을 살고 있다.

## 나. 반공주의 형성기의 여성 : 4.3 항쟁

1948년 4월 3일에 발발한 제주 4.3사건은 분단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대량 양민학살 사건이었다. 진상규명은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다. 제주 4.3항쟁이란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하여 미군정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에 대해 좌파계열의 제주도 무장대가 공격을 개시했던 1948년 4월 3일을 가리킨다. 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은 1948년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미군정의 지배 하에 있었다. 4.3의 도화선은 1947년 3월1일 제주 읍내에서 3.1정 시위군중에게 경찰이 발포, 찢먹이를 안은 여인, 농부 등 군중 6명이 사망하고 2500여명이 구금된 사건에 있었다. 그로부터 1954년 9월 한라산에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6년 6개월 동안 제주도 인구의 1/8이 경찰과 극우 서북청년단에 의해 사살되었으며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특히 소위 '초토화작전'이라고 불리운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의 4개월 동안, 양민학살은 집단광기라고 할 만큼 극에 달했다. 제주도 의회가 발간한 <제주도 4.3피해 조사보고서(수정보완판, 1997년 발간)>에 따르면 4.3당시 남성 사망자는 9,192명, 여성사망자는 2,443명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유력한 사망 인원수는 3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4.3과 관련한 여성피해 유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성희롱, 성고문, 성폭행, 공개적인 성행위 강요, 강간살해, 토벌대와 강제결혼 등 사건 당시 여성이 직접 당한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 한 남성이 임신을 하면 그의 부인과 자식, 장모까지 학살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들까지 '빨갱이 새끼'로 몰아넣어 학살 했다. 1948년 12월 14일 표선면 토산리에 들이닥친 토벌대는 얼굴이 고운 젊은 여자들만 따로 불러내 성폭

행 한 뒤 학살했다. 그 때 희생된 사람이 157명에 이른다.(양조훈,261)

강간을 당하고서도 속으로만 삭여야 했던 여성들, 가족의 죽음을 숨죽여 지켜보아야 했던 사람들, 부모가 처형될 때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러야 했던 사람들, 자신을 강간하고 자기 가족을 죽인 '적'과 결혼 생활을 해야 했던 피해 여성, 등 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서북청년단이 강제결혼을 감행하는 경우는 성적 대상으로 강제 결혼하는 사례와 제주에 안착하려는 목적으로 재정적인 확보를 위해 재력가의 딸과 강제 결혼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육지에 본처를 두고 있는 경우도 허다했다.

4.3에 얽힌 여성의 고통은 더욱 기구하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236편) 남편이나 부모형제가 '폭도'로 낙인찍혀 죽음을 당한 여성들은 '폭도각시' '폭도새끼'라는 주위의 비난을 들으며 살아야 했다. 강제결혼을 당한 여자나 강간당해 낳은 아이를 낳은 여자들도 '폭도각시' 그 아이는 '폭도새끼'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다. 지금도 여전히 법적인 남편으로 존재하고 자신이 낳은 자식의 아버지이면서 철천지 '적'인 이들과 함께 사는 여성들이 있다. 사건 이후 4.3항쟁에 연루된 가족과 여성들에게 '빨갱이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연좌제, 빈곤 등의 2차적 피해가 일생동안 지속되었다. 4.3 피해자들은 반공 이데올로기하에서 사회적 천대, 경제적인 궁핍, 그리고 혼자 자식들을 키워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지옥과도 같았던 그 시절을 견디어낸 이들의 정신세계의 폐쇄함은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다. 4.3당시 여성은 인간이기보다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이었다. 성적욕망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가해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확보수단으로 이용당했다. 가해자들은 재력가들을 잡아다 금품을 갈취하거나 재력가의 딸과의 강제결혼형태로 재정을 확보했다. 피해자 가족도 여성을 이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가족의 '생명보존 수단'으로 딸을 강제 결혼시키는 예가 그것이었다.

냉전체제는 집단적 광기의 인권유린을 가능케 했던 가장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남성 우월주의적 성의식은 국가적 폭력 속에 더욱 확대되었다(오금숙, 252-254). 4.3은 국가가 주민을 빨갱이로 인종화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국가폭력의 성정치를 보여 준다.(김성례157)

#### 다. 한국전쟁과 성폭력

한국전쟁동안 여성들이 얼마나 강간당하고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찾기는 힘들다. 수잔 브라운 밀러의 간략한 보고와 후지메 유키가 쓴 <국제여성조사단이 본 조선전쟁>이란 논문이 있을 뿐이다. <성, 성폭력, 성폭력의 역사>를 저술한 수잔 브라운 밀러는 전시 성적만행에 관한 역사적 추적을 위해 여행하는 동안, 잠시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다. 그 때 그는 한국전쟁 기간에 미군이 저지른 성범죄 통계를 입수했다.

1951년 5월 31일에서부터 1953년 5월 30일에 이르기까지 2년간 군법회의를 거쳐 유죄로 확정된 부분적인 통계였는데 거기에는 강간 23건과 강간을 의도로 한 폭행 9건이 나와 있었다.147쪽) 밀러는 이 통계가 미군이 8년간 베트남에 개입하여 주둔하고 있는 동안보다 더 많은 유죄발생건수라고 결론짓고 있다. 베트남에는 미군병력이 가장 많을 때 54만 3천4백명이었고 주한미군은 39만4천명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장병 1인당 강간율은 한국이 월남보다 더 높았다는 것이다. 전쟁 중의 강간발생율과 강간 보고율이 매우 낮은 사회적 환경을 감안하면 한국 전쟁 중 실제 발생율은 훨씬 높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후지메 유키 교수의 논문에는 한국 전쟁 중 북한여성들에게 자행한 미군의 폭력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그는 1951년에 평양을 방문해 행한 국제여성조사단의 조사보고를 인용하고 있다. 요즘 같이 군대의 성폭력을 중대한 전쟁범죄로 보는 관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때라서 보고서에는 성폭력의 문제가 일반적인 잔학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후지메 유키교수는 이 문제가 미군의 침략전쟁범죄사 속에서도 불가시화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미군점령 하에 체포되어 살해된 여성의 대다수가 잔학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생식기나 유방에 대한 공격, 나체로 벗기는 등의 우롱은 여성에 대한 고문에 일반적으로 쓰여진 방법이었다. 임신부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고문이 행해져 태아가 살상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점령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수많은 조선여성이 희생되었다. 강간, 강간치사, 강간미수치사, 같은 사례는 보고서 속에서도 수없이 예로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 피해의 실제수효를 파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국제여성조사단의 조사 속에도 일정한 통계가 나타나 있는 지역이 있다. 강원도 민주여성동맹의 권진희는 조사단에 대한 공식 보고에서 점령기, '13만의 주민이 있던 강원도에서만도 2,903명의 여성이 미군이나 이승만 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 보고에는 '안변군 안동면 미연리에서는 농민 여량선 가족의 3인여성이 반공호에 끌려 들어가 미군병사가 폭행을 하려 했을 때 저항하다가 유방을 잘리고 살해되었다. 강원도 문천군 만선리 감옥에서는 여성이 모두 구타당하고 그 가운데 20명이 폭행을 당했다. 강원도 원산 감옥에서는 미군병사가 매일 밤 소녀 몇 명씩을 골라서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전시에 여성에 대한 강간은 피해여성의 육체에 대한 적대행위인 동시에 피해여성의 남편, 혹은 아버지, 나아가서 타 민족에 대한 적대행위일 수 있다. 더욱 폭력적인 것은 강간이 일어나고 난 후, 남편들이 유린당한 처를 외면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또한 성폭력당한 여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척 또한 완강하다. 이런 점에서 전시나 전후 여성들의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전쟁사에 대한 성인지적 연구가 필요하다.

#### 라. 전후 여성의 고통

한국전쟁과 분단은 수많은 전쟁과부(전쟁미망인)와 빈곤여성, 그리고 1000만 이산 가족을 발생시켰다. 1954년 통계에 의하면 남한 전국 미망인은 293,852명인데 그중 전쟁 미망인이 101,845명으로 미망인 한 사람이 2.6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했다. 여기에 전재(戰災)미망인까지 합하면 그 수효는 엄청났다(1952년 전재(戰災)미망인의 수는 39만명).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가대책이나 사회보장제도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었다. 남편과 헤어진 이산가족 여성들도 재산, 물건, 서비스의 박탈과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의 박탈 그리고 폭력과 불안정 등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여성들은 경제적 무능력자였다. 생계담당자 남성을 상실한 이 여성들은 '혼자된 여자들'에 대한 사회적 멸시와 생계위협에 직면했다. 전후 부상병이 되어 돌아온 남편이나 아들을 가진 여성들도 형편은 동일했다. 그들에 대한 간호는 전적으로 여성들 몫이었다. 상이군인, 노인, 어린이들을 돌보며 여성들은 하루 하루 가족의 생계도 떠맡아야 했다. 이제까지 남편 부양을 받으며 사는 것을 천직으로 교육받아온 여성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 노동전선에 나서는 일은 엄청난 위협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과부에 대한 사회적 멸시 풍조에다 바깥일은 남성영역으로만 간주되던 때여서 과부여성이나 기혼여성이 바깥노동을 하는 데는 성희롱, 성폭력의 위협이 상시적으로 동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여성들에게 위협과 함께 경제적 자립의 기회도 부여했다. 수많은 위협과 불안정한 조건 속에서도 여성들은 장사에 나서는 등 경제활동에 뛰어들었다.

전후 절대빈곤에 내몰렸던 많은 여성들은 매춘으로 삶을 지탱해야 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팔 수 있는 기술이 아무 것도 없을 때 여성들은 자기 몸까지 팔아서 생계를 이어갈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일제 때의 공창제도가 인권유린을 이유로 8.15 해방 후 폐지하고 1961년에 새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한국의 후진적 저개발 현실과 복지제도의 미비, 전후의 극심한 빈곤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유엔군이 주둔한 특수사정과 6.25동란 후의 생활고로 윤락여성의 수는 급증했다. 1958년 한 일간 신문은 당시 우리나라 매춘여성이 30여만명이라고 보도하였다. 그 중 내국인을 상대하는 매춘여성이 40.9%, 유엔군을 고객으로 하는 소위 양공주가 59.1%를 차지하고 있었다(경향신문1958.8/11). 그러나 1962년 보사부에서 조사한 윤락여성의 총수는 14,719명이었는데 63년도에는 19,031명으로 증가했다. 서울 경우에는 62년도의 2,300명에서 매년 평균 20%씩 증가해서 66년도에는 4,200여명을 기록했다. 1958년 당시 당국의 조사로는 윤락여성이 된 동기의 67%가 생활고였다.

외국군의 진주는 그들의 성적충동을 만족시키려는 동기와 현지 여성들의 생계를 이어 가야 하는 요구가 부합되어 유엔 마담이라는 특이한 군상을 만들어 냈다. 1953년의 조

사에 의하며 유엔 마담 수는 25,479명이었다. 부산 해운대에서 1952년7월에 조사한 것을 보면 조사대상 368명중 미혼자가 122명이었고 기혼자로는 6.25사변에 미망인 된 자가 101명, 출정자(出征者) 아내가 52명, 사변 전 과부가 된 자가 17명, 이전의 접대부가 76명이었다. 그리고 이 길에 나서게 된 원인조사에서 생활난이 95%이며 실연 또는 가정불화에서 온 것이 5%였다(정요섭 "한국여성과 사회문제" <아세아여성연구> 5집, 숙대아세아여성연구소, 1966. 12 참조 )

해방 후 성매매의 공간은 미군의 진주와 한국전쟁 후 미군기지의 주둔, 그리고 남북 분단으로 인한 3년간의 군복무의무화 등으로 확고히 형성되었다. 40여년간 미군이 주둔하면서 양산한 소위 양공주들은 무려 25-30만에 이른다(박종성 21994,92) 서울의 용산, 동두천, 의정부 등과 부산의 서면 일대 하야리아 부대, 해운대 탄약부대, 제3부두 근방의 수송부대, 보급창 주변의 범일동, 초량 주변) 또한 한국군을 위해 용산, 청량리 588, 천호동, 영등포 등에 소위 윤락가가 형성되었다.

#### 마.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1980년의 광주민주항쟁은 박정희정권의 몰락 후 신군부의 권력장악기도에 대한 시민세력의 강력한 저항투쟁이었다. 완전무장의 전투태세로 진입한 공수부대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진 광주에서 5월 18일-27일까지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양민학살을 자행, 한국군인에 의한 시민 대학살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낳고 말았다. 공수부대의 야만적 진압과정에서 다수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이 가해지고 강간사건도 발생하였다. 남편을 기다리던 임신 8개월의 임산모 최미애씨는 공수부대의 정조준된 총격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당시 K여고 1학년생으로 5월 19일 5명의 계엄군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Y모양은 그날 이후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기이한 행동을 보이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1981년 초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요양원과 정신병원을 전전하다 1997년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Y(40세)씨는 5월 27일 새벽, 자택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부상당하였다. 어머니의 부상으로 당시 15세인 소아마비 아들의 보살핌이 소홀해져 아들의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강모여인(47세)은 5월 22일 지원동 버스종점 부근에서 총상으로 실명하였다. 결혼한 큰딸이 강모씨를 간호하던 중 외손녀가 화장실에 빠져 죽었고 큰딸은 그 후유증으로 아이를 못가지게 되었다.

여성의 피해는 보상과정에서도 나타났다. 5.18피해자에 취해진 의료부호조치는 남성이 세대주가 되는 가부장적 사회형질을 기초로 한 것으로 5.18피해자 보상과정에서의 성적 차별은 여성피해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재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아들이나 남편인 부상자를 간호하거나 보살피야 하기 때문에 여성은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커다란 부담을 지게 된다(안성례234). 피해여성들에 대한 가부장적 편견

또한 폭력적이다. 남편이 먼저 죽은 여성(여성 주체 삶김난희, 5.18민중여의 삶)85-88) 들을 우리 사회는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남편 잡아먹었다, 팔자가 썩다, 등으로 남편이 죽은 것을 부인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여성 또한 이런 생각을 내면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5.18항쟁 시 총을 맞고 사망한 남편을 15일만에 찾은 이숙자는 '팔짜가 썩어서' 남편을 먼저 보냈다고 생각, 남부끄러워 넉달 동안 밖에 나오지 못했다.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가가 이야기 되는 게 아니라 남편죽음의 책임을 여성들이 짊어지게 된다. 여성들은 보상이 나왔을 때 또 한번 상처를 받는다. 남편 가족들은 힘든 생활을 하며 아이들 키우고 있는 이숙자에게 보상이 나오면 새 출발할 수 있으니 이숙자가 보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가로막고 나섰다. 또한 갑자기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생계유지다.

#### 바. 분단체제, 군부독재, 성고문

1970년대는 유신체제가 등장하고 산업화, 도시화가 가속화 되었으며 그에 따른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부장적 군사문화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였다(변화순140).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한 군부독재권력은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개발논리를 내세우며 분단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했다. 6.25의 발발은 사회성원들 사이에 국가안위에 대한 불안을 실제 체험케 했으며 4.19와 5.16으로 이어지는 끊이지 않은 정치적, 이념적 격변상황은 국민의 안보위기위식을 계속 자극함으로써 반공의식도 한국민들 사이에 정착되어 있었다. 여기에다 북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위협은 사회내의 강제적, 경제적, 상징적 자원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변영운의 1985). 군부는 이런 냉전심리를 심분 활용,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국가안보논리를 내세워 과도한 폭력을 동원하고 기준없는 '처벌'에 의존, 공포문화를 조성했다. 이런 국가 폭력은 공권력은 물론이고 '구사대', '철거반'의 형태로 일상 속으로 파고 들었다. 폭력과 반공주의로 무장한 군사정권은 또한 전통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도 적극 활용하여 남성과 여성간의 '권력'의 차이를 확대시켰을 뿐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육체적, 언어적, 상징적 폭력)을 지배 메커니즘으로 사용해왔다.

1970년대에 군사정권은 관광정책을 장려, 가난한 여성들을 와화별이의 관광기생으로 동원하는가 하면 1978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 투쟁에서는 구사대를 동원, 여성노조원들에게 동물을 퍼붓는 야만적 행위를 자행하며 여성들의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했다. 1978년의 동일방직노동자들은 일찌기 민주노조를 결성, 한국 최초로 여성지부장이 선출되고 여성집행부가 결성된 곳이었다. 1980년대 여성들의 민주화투쟁을 탄압한 가부장적 군부독재권력의 폭력은 청량리 경찰서의 성추행과 부천시 성고문 사건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1980년대 초에는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장악이 끝난 후 점차 반독재투쟁과 생존권투쟁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찰 등 공권력의 폭력적 대응도 맹위를 떨치게 되었다. 공권력은 민주화운동의 탄압수단으로 여성에 대한 성추행과 성고문도 동원했다. 1984년 9월에는 전두환대통령의 방일 저지 시위가 계속 열렸고 이 과정에서 연행된 여자대학생들은 청량리, 서대문 경찰서 등에서 전투경찰에게 무자비한 폭행과 욕설, 성희롱, 성폭행까지 당했다. 한웅큼씩 머리카락이 뽑히는 매질, 위커 발로 짓밟기, 나체로 기합받기(생리 중인 여학생까지), 유방 주무르기 등의 온갖 방법을 동원, 시위저지의 수단으로 성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1986년 6월에는 부천경찰서에서 여대생을 성고문하는 폭력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세력들이 대통령직선제관철운동을 벌이게 되면서 위기감에 빠진 전두환정권은 가공할 고문정국을 만들어 갔고 이 과정에서 연행된 서울대 여학생에게 성고문을 자행했다.

분단체제하의 가부장적 군사권력은 전쟁, 조국근대화, 남성가장, 반공주의라는 이름으로 남성으로 상징되는 것에 대해 과도한 권력을 부여해 왔고 이러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과 여성적인 것을 '무 권력화'시키는 사회적 장치들을 마련해왔다.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배제, 여성 비하적인 언어, 여성 몸의 식민화 등을 통해 가부장적 폭력을 휘두르며(권혁범 94) 정권을 유지해 왔다.

#### 사. 군비지출과 여성 사회권

사람들이 물리적 폭력 대신,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때문에 죽거나 고통받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존재할 때, 군비지출은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에 기여하게 된다. 북한의 식량위기와 대량 아사사태, 그리고 남한의 경제위기와 대량 실업은 막대한 군사비지출이 어떻게 폭력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군사주의 정책은 여전히 사회복지비에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거액의 돈을 무기와 군대에 지출하게 만들고 있다. 국방부예산과 복지부 예산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2001년 국방부 예산은 원인데 비해 복지부 예산은 원이다. 복지부 예산중 여성에게 할당된 예산은 4.4%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복지비 예산비율을 보면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지를 알게 된다.

이것은 여성과 어린이는 군사주의에 희생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여성과 어린이들은 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국방비가 깎아 먹고 있는 열악한 사회 복지프로그램에 더 크게 의존해 살고 있다.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적 불평등은 여성들을 경제적으로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책에 더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서 여성은 우선 해고의 대상이 되고 비정규직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규제완화와 탈규제 등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 아래서 연금제도나 사회보장제도, 교육제도, 국가기간산업도 민영화하고 수익성모델로 바뀌면서 사회적 기본권이 위협당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함께 사회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등을 두고 있으며 사회권적 기본권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과 교육, 환경권 등을 두고 있다. 사회권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의료와 교육, 실직, 은퇴, 장애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국가나 사회공동체가 최소한의 생활이나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안전망,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깨끗한 공기,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등 쾌적하게 살 권리, 일자리에 대한 배려, 아이들, 노인들, 여성들, 장애인들 기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은 소외된 자로써, 여성의 모성기능, 가족부양기능을 사회적으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 또한 사회권의 주요 내용이다(여연자료, 2001). 그러나 분단체제와 과도한 군사비지출은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군비지출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군관계자들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것이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비지출이 일자리 기회를 만들긴 하지만 돈이 다른 경제분야에 쓰일 때보다 군대분야에 쓰일 때 더 적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IMF체제 하 경제여건의 변화는 그 동안 성역 시해했던 국방비를 감축하여 생산적인 경제분야로 돌릴 수 없는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1998년 말 국방비 감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 바 있다. LG 경제연구원이 계량적 방법에 의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막대한 군사비 규모를 줄여 생산적인 경제분야에 돌린다면 상당히 큰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경제의 생산이나 부가가치가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국방지출을 줄이고 기여도가 높은 여타부분으로 자원이 재분배된다면 경제의 생산이나 부가가치가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8년도 국방예산 13조8천억원 가운데 10%인 1조3,800억원을 감축하여 정부고정 자본형성에 투자한다면 7,811억원의 생산증대와 3,092억원의 부가가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이철기 1998에서 재인용)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무기거래, 무기생산 및 구입비를 비롯한 과도한 군비지출은 사회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크게 위협하는 폭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자. 대인지뢰와 여성

분단체제는 한반도를 지뢰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64개국에 1억 개

이상의 대인지뢰가 산재해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는 100만개의 지뢰가 매설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군 주둔지역이었다가 나중에 민간인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한 양구군 해안면에는 주민 1천7백명 가운데 불구가 됐거나 죽은 사람이 55명이나 된다. 특히 가난한 농촌여성들이 대인지뢰로 인해 고통을 받는데, 약초가 지천으로 널려 있는 지뢰밭 너머의 유혹에 넘어가 목숨과 맞바꾸는 가난한 농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에 가면 땅을 때는 하루 20만원도 벌고 ...그 재미 바라다가 이렇게 됐지'. 강원도 양구군의 민통선 안쪽 마을로 시집와 지뢰밭 한가운데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김옥자 할머니는 3년전 여름날, 산채를 캐러 갔다가 발목지뢰를 밟아 엉덩이와 허벅지가 날아가고 뼈가 부러지는 치명상을 입었다. 보상은 커녕 출입금지지역에 들어갔다고 벌금 300만원을 내란다며 할머니는 치료비 걱정과 가난한 살림살이 걱정에 쌓여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김씨가 지뢰를 밟은 곳은 북한이 제4땅굴을 통해 남침이 쉬운 곳이어서 북한의 침투에 대비해서 비행기로 발목지뢰를 대량 살포한 곳이었다. 군부대는 이 곳 곳에 출입금지꺾말만 하나 세워놓고 있을 뿐, 사고를 당한 곳에는 맨질 맨질하게 길이 있었고 철조망도 없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이었다. 김씨가 사는 해안면 오이리만 해도 93년에 두릅을 따던 최씨가 죽었고 약초를 캐러 간 한 할머니가 지뢰를 밟아 주검도 못 찾고 조금 살덩어리를 주워다가 장사를 지냈다.

이 밖에도 96년 5월에는 서울에서 온 성부현 여인이 연천군 야산에서 나물을 뜯다가 대인지뢰를 밟아 사망했다. 97년 5월에는 강원도 철원에서 박금녀 할머니가 나물을 뜯기 위해 미확인 지뢰밭에 들어왔다가 대인지뢰를 밟아 왼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아래 휴전선과 나란히 있는 민통선 안쪽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난을 지고 사는 이들에게 지뢰밭의 약초가 너 무 큰 유혹인 탓인 동시에 지뢰지역에 대한 군 당국의 철저한 관리의 부재와 주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미비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 평화적 분단체제는 평시에도 지속적으로 여성과 가난한 이들을 무기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국방부가 97년 10월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지뢰사고현황에 따르면 92년부터 97년 8월말까지 모두 44건의 지뢰사고가 발생해 3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자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사상자 가운데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은 29명으로 전체 사상자의 37%를 차지해 파악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사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아. 미군주둔과 여성

미군은 1945년 9월 7일 점령군의 자격으로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3년간의 미군정기를 거친 후 미군은 1949년 6월 철수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 참전으로 다시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었다. 지금 한국에는 95개의 미군기

지가 있으며 약 73,000 에이커의 땅에 37,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군최고사령관이 한국군과 미군을 지휘하고 있다. 한국을 해방시키고 북한군으로부터 국가의 안보를 지켜 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장기 주둔하게 된 미군은 지배국의 군대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누리며 패권주의적 행동을 보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1945년 9월 이후 1999년 10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군범죄는 약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강간사건은 강도사건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46년 3월, 미군 4명의 부녀자 윤간사건을 필두로, 1956년 14세 소녀 강간사건, 1967년 딸과 어머니를 함께 강간한 사건, 1971년 산에서 약초 캐던 여인을 미군 8명이 윤간한 사건, 1986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 마을에 들어와 임신 6개월이었던 교사를 5명의 미군이 윤간한 사건, 1996년 농아원생 추행 사건, 1997년 5월 여섯 살 소녀 성추행사건, 2000년 대구에서 무려 38명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미군속 '헬로우 아저씨' 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성폭력 범죄들이 계속되었다.

정부 통계를 보면 1967년부터 1991년까지 연간 1천1백건에서 2천 3백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하지만 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율은 아직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1998년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은 3.9%(미군속 등의 재판권 행사율은 24.6%)(미군범죄백서,1999) 1992년부터 미군범죄가 연평균 7백-8백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군범죄의 대상자는 주로 여성이다. 이 여성들 중에서도 주한미군범죄의 상당한 피해자들은 기지촌 여성들이다. 기지촌여성들은 흉악한 상태로 살해되고 강간당하고 있으나 그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한국민의 관심이나 분노를 일으키지 못할 뿐 아니라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 때문에 미국의 공식사과도 받아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군범죄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즉 미군 범죄는 미군들의 오만함과 점령군적인 태도, 폭력을 장려하는 군사주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사대적인 한국정부,라는 4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문제다.

### III. 여성체험에 대한 젠더 분석 :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한국전쟁과 냉전체제 아래서 유린되는 여성의 인권침해 사실은 오랫동안 봉인되어 왔다. 국가안보론과 군사동맹 우선주의 그리고 남성중심주의에 밀려 여성에게 가해지는 한반도 냉전체제하의 수난과 고통은 오랫동안 역사지평에 들어오지 못했다.

한반도에서의 여성체험 보고는 한국 근.현대사를 통해 여성 개인들의 불행한 삶을 의도한 강력한 배후 정체를 드러내 주고 있다. 그것들은 식민세력, 전쟁, 국가권력으로 집약된다. 이들은 모두 군대와 군사주의에 기초해 있으며 파시즘을 통해 자기를 실현한다. 따라서 여성체험보고는 여성들이 군사주의의 극심한 피해자였음을 드러내 준다. 군

사주의의 폭력은 한반도 민중 전반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한반도 민중이 겪은 수난에 더해 모성의 유린 및 파괴, 성고문, 강간, 윤간, 성노예 등, 성폭력의 가혹함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부가되었다. 일제 말기엔 정신대로, 반공주의 하에선 '빨갱이의 몸'으로, 전후 빈궁기엔 매춘여성으로, 미군이 주둔할 땐 양공주로 더 큰 고통에 내몰렸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윤금이 사건이 말해주듯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일상화시키고 있다. 이 사실은 군사주의와 가부장제의 동맹관계를 말해준다. 식민세력이나 국가권력 모두 그들의 폭력적 지배에 가부장제를 심분 활용했다.

여성체험 보고는 또한 국민 동원과 국민 순치시키는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는 국가안보론의 허구를 고발한다. 국가가 자신의 존립을 위하여 자신의 주민을 학살하고 성폭력을 범하는가 하면 외국군대의 주둔을 허용하고 주민에 대한 그들의 범죄를 묵인하는 모순을, 그리고 식량위기, 실업위기로 주민의 안전한 삶이 위협받아도 대규모 군비를 소비하는 모순을 국가안보론은 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고 한반도에서의 여성의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자 할 때 여성체험에 대한 젠더 분석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군사주의에 대한 분석, 가부장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물론 여성체험에 대한 젠더 분석은 한반도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 생산에 상호 관련된 여러 형태의 '.....주의'를 포함해야 한다. 민족주의, 유교주의, 인종주의, 자본주의, 군사주의 등의 범주가 함께 분석될 때 비로소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한 조건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가부장적 군사주의에 한정시킬 것이다. 여성체험에 대한 젠더 분석은 단순히 군사주의의 영향을 다루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주의의 기본 이데올로기에 도전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가안보론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생략한다.

#### 1. 가부장적 군사주의

식민세력, 전쟁, 국가권력을 떠받치는 힘은 강제력이다. 이런 강제력이 지속적으로 행사되면 그것은 어느 틈에 한 사회의 작동원리로 고착되고 그것이 개인들에게 내면화되면 한 집단의 심성을 이루게 된다. 임지현은 '일상적 파시즘의 코드 읽기'라는 글에서 이런 현상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일상적 파시즘은 한반도의 속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임지현,2000). 제국주의가 강제한 식민지 규율체제, 뒤이은 분단과 냉전, 한국전쟁이 결과한 반공규율체제, 유신독재와 1980년대라는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한국사회는 파시즘적 집단 심성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를 규율화시키는 이념적 도구인 반공주의, 전체주의적 심성과 위계질서를 구조화하는 언어생활, 청소년시절부터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시키는 학교교육, 군사화된 생산현장과 회사조직, 카

드섹션처럼 일사 불란한 학생운동, 사적 이해를 공적으로 포장한 의리에 죽고 사는 정치문화, 여성을 내적 식민지로 만든 가부장주의,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약자와 소수자를 타자화 시키는 가부장적 혈통주의 등, 파시즘의 집단심성이 한국사회의 결을 이루고 있다. 임지현은 이런 일상적 파시즘이 사회구조와 경제체제, 법과 제도, 정치제도와 사회운동 등 다양한 현상들의 물밑에서 우리의 일상과 의식을 움아매고 있다고 지적한다..

변화순은 한국사회의 이런 특성을 가부장적 군사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다(변화순,1995). 일제식민지, 군부독재를 통해 형성된 군사문화가 위계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질서와 결합하여 가부장적 군사주의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의 지적대로 가부장제와 군사주의는 동맹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전시나 평시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다. 군사주의에 대한 젠더 분석은 이런 기제를 명료하게 드러내 준다.

군사주의(militarism)는 '군사적 가치, 이데올로기 및 행동양식이 국가의 정치, 경제, 대외업무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사회나 정부기관의 구조, 이념, 행동양식들이 군사화되는 이른바 군사주의화 과정의 결과로 정의한다(World Council of Churches,1993).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군사주의는 물리적,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형태로 구현된다. 그것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물리적 형태의 군사주의는 전쟁, 군사개입, 대리병력을 이용한 타국 교란, 외세를 등에 업은 군사쿠데타, 해외 및 식민지 점령, 군사통치와 인권유린 등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군사주의는 제도적 형태로 구현되는데 무장병력과 군대에 과도하게 바치는 정부 예산이 그것이다. 군사제도가 민간분야에 점진적으로 침투하면 군사화가 일어난다. 예컨대 군대와의 계약에 의존하는 산업시설, 또는 실업 문제를 군대로 해결하는 국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로 군사주의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군사적 가치와 상징, 언어가 민간사이에 유포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은 1)각종 위계질서와 2)타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민족주의를 받아들이고 3)폭력을 분쟁해결의 합법적 수단으로, 그리고 4) 엄격한 성역할 구분을 받아들이도록 촉진시킨다.

첫째로 타자를 지배하는 힘은 군사주의의 기본가치다. 군사화된 사회에서는 '힘이 곧 정의'이고 사회는 지배-종속의 관계방식을 토대로 성립되어야 하며 이 관계방식은 개인간의 관계에까지 파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 드리게 된다. 이 위계질서는 억압 형태로 보이기보다 사회안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둘째로 군사적인 민족주의는 한 집단의 정체성이 타자의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민족주의는 시민들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정체감을 갖도록 영향을 미친다. 민족주의가 군사주의와 연결되면 타자는 '적'이 된다. 군대 이데올로기는 '다름'으로 부터 '적'을 만들고 '적'의 존재를 군사주의 지속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한다. 셋째로 군대는 조직된 폭력과 무력의 사용이

사회를 통제하고 사회안정을 확보하는 주요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군사주의는 사회의 제반 폭력의 배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무력사용을 합법적 수단으로 간주하고 사회도 그것을 받아 드린다. 이것은 전쟁을 미화하고 폭력을 필요한 것으로 묘사하는 미디어 때문에 강화된다. 강제력과 물리적 폭력을 문제해결의 주요 방법으로 받아 드리게 될 때 그것은 가정과 제반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

넷째로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적 구현의 하나는 엄격한 성역할 구분이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된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젠더 범주는 생물학적 성에 문화적으로 부가된 사회적 관계, 가치, 행위, 특성이다. 젠더 특징은 남녀를 적극적/소극적, 논리적/직관적, 합리적/비합리적, 등등 두 가지 반대 특성으로 규정한다. 인간적 가치와 특성들을 남성적, 여성적 범주로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사회에서의 차별과 폭력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남성의 사회화는 여성의 사회화와 대조적이다. 남성이 강하고 용감하고 공격적이라면 여성은 약하고 수동적이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교육된다. 따라서 전쟁에서의 남성성은 여성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신화에 기대어 있다. 가부장제 사회는 보호해야 할 '좋은' 여자(아내, 어머니, 애인)와 사용 가능한 '나쁜' 여자(창녀와 적의 여성)를 가정(assume)하고 있다. 군대정신에서 이런 구별은 매우 분명하다. '그'의 여성들의 자유와 명예를 위해 싸우는 군인은 '그들'의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할 수 있다. 여성들은 보호가 필요한 희생자로서 또는 착취해도 좋은 성적 대상으로 오직 남성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들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들의 주체성을 거부한다. 이와 같이 군사주의는 양성간의 평등성을 반대한다. 남성성의 구축은 군사주의 보존에 필수적이다. 군사훈련은 남성들을 전사로 바꾼다. 남성들의 군사화 과정이다. 남성적이고 집단적인 것은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이것은 공동체나 협력의 정서이기보다는 위계와 지배/복종의 모델 위에 기초해 있다. 군대는 획일성을 필요로 하고 남성성의 엄격한 코드는 어떤 다름도 허용치 않는다.

군사주의는 병사들과 무기가 필요한 것처럼 젠더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군사주의는 죽기까지 명령에 복종하는 전사의 역할을 신봉하고 받아들이는 남성들과, 여성의 역할을 받아 들이고 국익을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고, 전투에 임하도록 사기를 불어넣고, 군대에서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여성들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젠더 역할의 구축은 순환적이다. 군사주의는 가부장적 관념에서 나오고 가부장적 관념은 군사주의를 영속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렇게 군사주의는 성역할구분을 강화한다.

젠더 범주의 강화 이외에도 군사주의가 평시나, 전시에 남녀에게 상이하고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방식들이 있다. 1) 군사주의가 여성에게 끼치는 경제적 영향, 2) 여성에 대한 폭력, 3) 매춘제도, 4) 군대 안의 여성들의 문제, 5) 전시 강간, 강제임신, 고문으로 인한 임신모들의 유산, 6) 전시 제도화된 강간 문제가 그것이다. 우

선 군사주의는 대규모 군사비를 소모시킴으로써 사회보장체계를 약화시키고 이는 여기에 삶을 기대고 사는 가난한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대로다. 둘째로 군사화된 사회에서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식으로 인식된다. 여성은 바로 이런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 군사주의의 기본가치의 하나가 타자에 대한 지배나 권력이다. 여성은 타자로서 인식되며 남성은 여성에 대한 통제와 사용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사회화된다. 미국에서는 군대의 권위주의와 훈련 시 물리력의 사용, 잦은 이동과 이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군인가족 내의 가정폭력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 분야의 조사가 필요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엄격할 성역할 구분을 강화한다. 폭력의 희생자들은 여성다운 행동을 벗어 났기 때문에 일을 당한 것이라고 비난받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성역할에 맞추려 노력하게 된다. 강간은 여성에 대한 남성다운 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것은 성의 공격적인 표현(aggressive expression of sexuality)이 아니라 공격성의 성적 표현(sexual expression of aggression)임을 기억해야 한다. 강간은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질서의 또 다른 징후로써 군사주의 문화 때문에 곧잘 용서되곤 한다. 군사주의 문화는 남성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침입과 폭력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로 군대가 평시에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다 더 직접적인 방식이 군 기지의 존재다. 기지 주변에는 으레 돈으로 성을 사려는 군인들, 여성을 착취해서 돈을 벌려는 남자들, 지역주민의 빈곤 등이 결합되어 성 산업이 구축된다. 미군기지 주변과 군인들의 사용이 빈번한 주요 철도역 주변에 형성된 수많은 기지촌과 흥등가가 이를 설명하고 있다.

넷째로 군대 안의 여성문제다. 최근 육,해,공군에 여성 입대가 허용되고 지원자도 늘고 있다. 여성의 군인화에 대한 논쟁에서 중요한 점은 군대 내 여성의 역할과 군인여성들이 겪는 성폭력문제다. 우선 여성의 군 입대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남녀평등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또는 전통적인 남성영역에의 여성 진출로 성역할 구분을 파기하는 것으로 환영할 것인가, 아니면 공격성이라는 남성성에 기초한 제도에서의 여성참여로써 오히려 사회의 군사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볼 것인가 등의 논란이 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쟁해야 할 분야다. 이미 알려진 사실로는 군대 내 여성의 역할 역시 일반사회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군대내 348가지 업종 중 28직종만 여성에게 달혀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 분야가 군대업무의 42%를 차지하고 승진의 필요조건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군인여성들이 겪는 성폭력문제다. 아직 한국에서는 공론화되지 않고 있지만 이미 사이버에서는 성폭력사건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도 앞으로 쟁점화해야 할 분야다. 미국에는 군대 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여러 상담소가 활동 중이다.

다섯째로 저장도 무력갈등이나 전시에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이미 제주도 4.3항쟁에서 보듯이 강간, 강간으로 인한 강제임신, 강제결혼, '고문으로 인한 임신' 등의 유산, 성고문 등이 모든 형태의 무력갈등시에 수반된다. 구 유고지역에서처럼 인종청소의 방편으로 강간이 자행되기도 한다. 전쟁중의 단순한 지배원리는 '승자가 강간한다'는 점이다. 강간은 정복자의 행위다. 중세에 불규칙적으로 봉급을 받는 일반 보병들에게 개방된 몇가지 특혜가 가운데는 강간과 약탈을 자행할 기회가 들어 있었다. 동로마 황제 알렉시우스는 십자군 모병을 호소했을 때 회랍여성들의 미모도 선전했다. 당시 정복자의 강간에는 심리적인 이유와 실용주의적 이유 두 가지가 있었는데, 병사들에게 강간은 남자다움과 성공을 확인하는 부분적 증거이며 또한 군복무에 대한 실제적 보수가 되는 셈이었다.(49)

여섯째로 전시 제도화된 강간의 형태가 있다. 정신대문제가 그 예로써 국가와 군대가 사설업자와 협력, 강간센터를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강간을 강요하는 형태다.

이 밖에도 무력갈등 시 여성들이 당하는 피해는 가족상실, 부상, 살해, 강제노동, 재산상실, 정신적 트라우마, 피난 등 전시에 사회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를 함께 당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성들은 부상가족, 어린이, 노인을 돌보는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동시에 생계책임을 이중적으로 걸머진다. 여기에다 가부장적 굴레는 남성보다 여성을 더 큰 피해자로 만든다.

맺는 말

일제식민지, 미군점령기, 전쟁, 분단, 군사독재 등으로 점철된 한국 근.현대사는 이 땅에 몸붙여 사는 민중들의 인간다운 삶을 파괴해 왔다. 일제와 미군정을 거치면서 축적된 국가테러리즘은 이후 반공주의 국가 형성기로 이어졌고 외세의 직접지배로부터 벗어난 후에도 반공주의를 새로운 국가정체성의 중심가치로 하는 반공 국가 형성 과정에서 이미 국가는 폭력(관리 및 행사)기구의 속성을 띠어 왔으며 그러한 속성은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정교해졌다. 적절하고 충분히 제어되지 않은 국가의 폭력성은 민중들의 생존과 인권,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연대를 송두리째 파괴하였다. 전쟁과 국가지배력을 장악, 유지, 강화하기 위해 조작, 왜곡된 사건 등에 의해 수많은 민중이 목숨을 잃고, 신체적, 정신적 외상과 질병을 얻고, 차가운 감옥과 도피처에서 자유와 청춘과 미래에 대한 꿈을 강탈당하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폭력적인 한반도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피해와 고통은 훨씬 더 극심했다. 정신대로, 피폭자로, 4.3항쟁의 수난자로, 한국전쟁 속의 피해자로, 광주항쟁의 피해자로, 미군폭력의 희생자로, 민중여성들은 군사화된 사회의 맨 밑바닥에서 가부장제와 군사주의의 폐

해를 온 몸으로 겪어 왔다. 그러나 군사주의와 전쟁, 인권논의에서 오랫동안 여성의 특수한 경험은 불가시적으로 처리되었다. 한반도에서의 여성체험에 대한 젠더 분석은 여성들이 군사주의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더구나 젠더 분석은 군사주의와 가부장제사이의 강고한 연결을 보여줌으로써 여성들이 그들 경험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뿌리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가부장제 해체운동이 군사주의 해체운동과 결합되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해준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폭력과 억압과 개인적인 폭력과 억압사이의 연결을 보도록 안내한다. 따라서 가부장제와 군사주의가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한 평화나 정의는 없다는 사실을 계몽시킨다.

여성체험에 대한 젠더 분석은 또한 폭력을 자연스런 것으로, 가부장제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사회화시키는 군사주의의 역할을 보게함으로써 지배-복종의 젠더 체계 또한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사회화를 통해 구성되고 이것이 불의한 정치경제 구조를 통해 영속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

여성체험에 대한 젠더 분석은 여성들이 군사주의에 반대할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하며 사회전반의 군사주의 문화를 평화문화로 전회시킬 필요성을 알게 한다. 평화문화는 성역할을 반대특성으로 나누는 이원론을 해체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화해와 협력의 적극적 특성을 갖도록 사회화하는 것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만일 여성과 남성이 평화를 건설하려면 젠더에 기반한 억압을 제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여성과 남성이 해방을 원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종식과 비폭력세계의 성취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주의와 전쟁에 대한 젠더 분석은 여성운동, 평화운동의 기초다. 평화는 비폭력과 평등과 정의의 결합이다. 평화는 모든 사회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부재를 의미한다. 나아가서 권리의 평등을 의미하며 사회 모든 구성원이 비폭력적 방법으로 자원분배 결정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비폭력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페미니즘도 비슷하다. 하나의 사회운동 사회 이데올로기로써 그것의 목적은 여성의 능력 강화, 남녀사이의 평등성취, 정의로운 사회 창출을 포함한다. 한국사회의 평화는 이 양자의 운동이 결합될 때 그 밝은 미래를 보장 받을 것이다.(끝)